

수위 및 경비원 직종 안전 매뉴얼

2013



넘 어 짐 주의



추 락 주의



수위 및 경비원 직종 안전 매뉴얼

I.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현황

1.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정의.....1
2.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작업 유형.....3
3.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현황.....7

II. 산업재해 현황

1. 최근 5년간(2008~2012) 산업재해 특성.....9
2. 외국(미국, 영국, 일본)의 재해현황.....12

III.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재해 예방

1. 표준 작업공정 흐름도.....15
2. 공정별 위험 요인 및 주요 재해 사례.....17
3. 세부공정별 위험성평가.....31
4. 수위 및 경비원 직종 작업안전 수칙.....47
5.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주요 안전표지.....54

IV. OPL(One Point Lesson)

1. 순찰보안 작업관련 유형별 OPL.....55
2. 고객응대 작업관련 유형별 OPL.....56
3. 시설관리 작업관련 유형별 OPL.....57
4. 환경미화 작업관련 유형별 OPL.....58
5. 분리수거 작업관련 유형별 OPL.....59

V.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언

1. 수위 및 경비원직종 관련 국내법규.....60
2. 수위 및 경비원직종 관련 외국제도.....86
3. 수위 및 경비원직종 관련 제도 제언.....89

VI. 직종 관련 단체/기관 및 정보

1. 해외.....92
2. 국내.....101

VII. 기타 활용자료

1. 경비업무 현장점검표(체크리스트).....106
2.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108

수위 및 경비원 직종 안전 매뉴얼 요약

I.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현황

1.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정의

● 수위 및 경비원은 아파트, 주택, 사무실, 교회 및 기타 건물을 관리하며, 불법침입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옥과 기타 재산을 감시·경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12 한국직업사전(한국고용정보원)에선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불법침입, 도난, 화재,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사람을 **경비원**(분류번호 1120)이라고 정의하였다.

● 경비원의 직무(한국표준직업분류, 2007)는 건물에 출입하는 방문자를 점검하고, 출입자에게 방문목적, 방문대상자, 연락처 등을 받아 기록한다. 주요 시설물을 순찰하고 보안상에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교대근무자에게 경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인수하거나 인계받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 **경비원**은 수위실, 경비실 등과 같이 정해진 장소를 거점으로 불법출입자나 이상한 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문자를 안내하며, 물품·비품 등의 보관을 담당하는 구실을 맡고 있다. 또한 소화 장비·비상벨 등 재해방지 설비를 점검하여 도난·화재를 방지하며, 모든 사람이 시설물을 떠난 뒤 창문·출입구 등 모든 문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 **경비원의 직무**는 경비를 맡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위치·규모·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아파트 경비원은 야간 순찰을 하고 낮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며, 입주자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열쇠 등을 맡아 준다. 공장이나 대학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출입구의 경비초소에서 출입하는 사람의 용무를 확인하며, 신분증을 검사하여 출입증을 교부하고, 교통안내를 할 때도 있다.

● **경비원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용모면 된다. 특별한 시험 없이 면접으로 고용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무술 유단자가 선호되기도 한다. 경비원은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이 필요하며, 시각과 청각이 좋아야 한다.

● **경비원**은 주로 주야간 교대제로 근무한다. 경비라는 일 자체는 단조롭지만, 맡고 있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긴장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근엔 주로 경비전문 용역업체가 회사·기관·아파트 등과 계약을 맺고 경비원을 모집, 충원하고 있다.

●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정(Regulations, standards-29CFR)을 발표하고 동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구축,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OSHA에서는 별도로 경비 담당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검색되었다.

● **영국**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민간경비산업의 규제를 위한 정부 계획안”이라는 백서에서 민간경비산업의 규제안을 제시하였다. 2001년에 민간경비산업법(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 Security Industry Authority)’라는 새로운 규제기구가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는 민간경비 각 분야에 대한 자격증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규제방법의 적용으로 민간경비원들의 직업적 전문성 수준과 성실성이 향상되었고 이직률이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 경비 업체나 경비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본 매뉴얼의 대상으로 제시된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대상 범위는 **아파트 경비원**과 빌딩, 학교, 기관 등의 **빌딩/공공기관 경비원**으로 한다. 그리고 경비 직종의 작업 범위로는 고객응대, 순찰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의 주요 작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2.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작업 유형

3.1 고객응대 작업

● 아파트(공동주택) 수위 및 경비원의 고객응대 작업의 목적은 입주민 및 거주자와의 유대강화이다. 입주민 및 거주자의 유대강화에서 문제점인 주인의식의 상실 또는 입주민 및 거주자와의 단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입주민을 위한 진정한 관리자로 변모시키며,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와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여 맡겨진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응대 작업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민과 항상 대화와 호흡을 같이하는 관리자로 근무한다.

- 어른에게 공손하고, 자녀들에게 자상한 경비원
- 항상 먼저 인사하는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비원
- 입주민의 요구사항에 밝은 모습으로 동적으로 행동하는 신뢰받는 경비원
- 엄격한 통제자와 친절한 안내자로서의 충실한 경비원

(2) 아파트 입주자 응대요령에 대한 기본적 교육의 실시한다.

-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리자의 모습으로 이미지 전환을 위한 교육 실시

(3) 담당구역의 제반 업무에 숙련수범하는 자세로 근무한다.

- 입주민 민원사항 접수, 우편물, 홍보물 배부, 관리소의 업무전달사항 등

● 고객응대 작업에서 빌딩/공공기관의 수위 및 경비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시간에는 항상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언행을 조심하고 상주인원 및 내방객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2) 근무 중 무단 이석, 금주, 금연(특히 1층 안내데스크 절대금연), 고성방가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

(3) 근무 중 습득물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고, 지침을 위반하거나 물품을 손상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4) 출입자의 동태에 유의하고, 거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분확인 등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한다.

● 빌딩/공공기관의 경비원의 고객응대 작업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내방객의 안내 및 출입자의 단속

(2) 출판물 및 우편물을 접수하여 우편함에 배부하고 우편물의 유실이나 도난방지

- (3) 규정된 시간 맞춰 출입문을 개폐
- (4) 출입 시 작업원 및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상 시 즉시 보고
- (5) 각종행사 편의 도모



【그림】 고객응대 작업

3.2 순찰보안 작업

● 아파트(공동주택) 수위 및 경비원의 순찰보안 작업은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도난예방 및 입주자의 안전, 화재예방 등이 있다. 빌딩/공공기관 수위 및 경비원의 작업은 빌딩 및 관련시설물의 재해 및 도난방지와 외부로부터의 불순분자 침입 등을 사전 봉쇄하여 각종 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은 수위 및 경비원의 일반적 순찰 방식인 순회순찰 작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1) 경비원은 순찰전역에 거쳐 방법, 화재예방, 질서유지에 유의하여 순찰하되, 청소, 정돈, 건물 및 기구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 예는 보고한다.
- (2) 야간순찰은 통상 일정 시간(예를 들면 2시간) 마다 실시하며, 부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도난사고 및 불법침입을 예방한다.
- (3) 순찰 시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 각실 출입문의 개폐여부
 - 각실 잔류근무자 및 배회자 유무
 - 소화기의 정위치 및 화재예방 점검
 - 출입통제지역의 출입통제
 - 기타 경비 직무에 관한사항

● 수위 및 경비원의 순찰보안 작업의 목적은 대지,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침해행위, 파괴행위, 도난 등의 예방 및 저지에 있다. 순찰보안 작업에는 순찰, 경비, 교통정리 등이 있다. 아파트 수위 및 경비원의 순찰보안 작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찰보안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다.

- 1) 단지순찰 계획서를 관리소와 협의하여 세밀하게 재수립·시행한다.
- 2) 단계별(1-3단계)순찰 강화로 상호 취약점을 보완 시행한다.
 - 1 단계 순찰: 경비반장(전체 동 순찰)
 - 2 단계 순찰(구역별 순찰): 단지를 일정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 취약지역 순찰(주차장 등 취약지역)
 - 3 단계 순찰(대당 동별 순찰): 해당초소 경비원이 담당구역 등 집중 순찰(계단, 옥상, 지하실 등)
 - 각 단계별 순찰기록을 해당 경비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 3) 취약지역의 집중순찰을 강화한다.
 - 보행자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체육시설, 주차장 등
- 4) 우범시기(명절, 휴가철, 연말연시)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 6) 경비일지 외 외부출입자 및 방문차량일지 기록을 철저히 한다.



【그림】 순찰보안 작업

3.3 시설관리 작업

● 수위 및 경비원의 시설관리 작업은 아파트, 빌딩 및 관련시설물(전등, 냉난방기기, 소방기기 등)과 차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시설관리 작업에는 건물관련 기기관리와 단지 및 건물 내 주차관리 및 불법주차 단속 및 경고문 부착, 차량일지 기록 등이 있다. 다음은 단지 및 건물 내 차량관리 작업과 관련된 업무이다.

- (1) 주차 스티커 미발급 차량 및 주차선 위반차량에 대한 능동적 관리
 - 관리소와 당사 협의 부담으로 차량스티커, 주차위반 경고스티커 제작 시행
 - 입주자 차량현황에 대한 조사 및 기록의 철저한 유지관리 시행
- (2) 차량도난 및 접촉, 파손사고 시 신속한 대응처리 주력
 - 본사의 신속한 현장출동, 사고내용 조사 및 피해 세대 합의 처리 주도
- (3) 방문차량에 대한 친절한 주차안내 및 통제관리
- (4) 당사 차원의 단지 내 주차협조 캠페인 활동 전개

(5) 차량출입로 상가주변의 철저한 주차통제 시행

● 빌딩/공공기관의 수위 및 경비원의 시설관리 작업 중에서 빌딩/공공기관의 물품 반·출입 통제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물품의 반·출입은 지침에 따라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허용한다.
- (2) 긴급을 요하거나 지침에 의한 것을 제외하곤 일과시간 이외에 물품의 반·출입을 금한다.
- (3) 부정 반출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한다.



【그림】 시설관리 작업

3.4 환경미화 작업

● 수위 및 경비원의 환경미화 작업은 아파트, 빌딩, 사무실 등 각종 건물 및 시설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다음은 아파트 수위 및 경비원의 환경미화 작업과 관련된 업무 사례이다.

- (1) 전체 경비원에 대한 환경관리 책임제를 시행한다.
 - － 미화원의 청소감독 역할 담당 및 청소상태를 경비일지에 기록유지
 - － 해당 동 주변 외부청소는 경비원이 솔선하여 실시
- (2) 봄맞이 환경정비 및 화단정비, 제초작업, 분리수거 작업을 능동적으로 처리한다.
- (3) 미화원 공백시간(토요일 오후~일요일) 승강기, 현관, 동 주변 청소를 솔선 시행한다.
- (4) 오물(음식쓰레기) 수집장 주변 및 쓰레기 처리장 주변은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히 관리한다. 월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한다.
- (5) 건물 외부 청소(놀이터, 주차장, 지하주차장, 울타리주변 녹지 등) 건물 외부를 매주 1회 이상 깨끗이 청소한다. 놀이터의 휴지통과 재떨이는 수시로 비운다. 지하 주차장은 주 1회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물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작업은 퇴근시간에 관계없이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 6) 그 외 기타부분
 - 옥상 또는 지하실은 주 1회 이상 청소하며 특히 지하실은 하절기에 우수관이 막힘이 없도

록 수시로 청소한다. 청소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한다. 기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은 시행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그림】 환경미화 작업

3.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현황

● 아파트와 빌딩/공공기관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관련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수위 및 경비원

- 아파트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관련자는 60세 이상의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실정임
- 직종 특성상 소규모로 모집이 이루어지고 남성 고령자(퇴직자) 위주이다.
- 아파트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은 상용근로자가 많고 다음으로 임시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음
- 특별히 경비협회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인맥이나 정보지 등을 통해 취직을 하므로 권리 보장 등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주야 2교대 혹은 24시간 맞교대로 격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 고령자들이 많이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 장시간 근무, 24시간 맞교대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음
- 겨울에는 제설작업, 여름에는 제초작업, 가을에는 낙엽정리 등의 작업이 경비 인원수에 비해 아파트가 넓은 경우엔 힘이 많이 든다고 호소하고 있음
- 분리수거 작업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 사고가 크게 날 수 있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공정은 야간순찰, 교통정리 등이 있음

(2) 빌딩/공공기관 수위 및 경비원

- 빌딩/공공기관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관련자는 아파트 경비원 직종 관련자보다는 고령자 비율이 낮지만, 60세 이상의 남성이 가장 많음
- 빌딩/공공기관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은 상용근로자가 많고 다음으로 일용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음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교대 근무가 많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파트 경비 직종 관련자보다는 근무형태 및 시간의 비율이 낮음
- 고령자들이 많이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 장시간 근무,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업체 판도는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로 젊고 힘이 센 경비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Ⅱ. 산업재해 현황

1. 최근 5년간(2008~2012) 산업재해 특성

● 최근 5년간(2008~2012년) 발생한 재해자 자료에서 직종, 산업, 재해개요에서 순찰, 소등, 경비, 민원, 주민, 정비, 점검, 분리수거를 단어로 검색하여 추출된 재해자 5,06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재해자 분포는 아파트(50.4%), 빌딩(47.6%), 건설현장(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사고도 빌딩에서 52.8%, 아파트 41.6%로 나타났다. 작업 유형별 재해자의 평균 근로손실일수에서는 건설현장이 802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빌딩 425일, 아파트 340일 순으로 나타났다.

【표】 근무지 유형별 재해자의 분포와 근로손실일수(단위: 명, %)

유형	재해자		근로손실일수 평균(일)	사망자	
	재해자수	점유비율		사망자수	점유비율
아파트 경비원	2,550	50.4%	340	67	41.6%
빌딩 경비원	2,411	47.6%	425	85	52.8%
건설현장 경비원	101	2.0%	802	9	5.6%

● 재해자의 성별 분포는 99.3%가 남성이며, 사망사고는 100%가 남성에서 발생하였다.

● 재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재해자는 60대 이상에서 72.5%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사고도 60대 이상에서 79.5%가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 재해자의 근속기간별 분포를 보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재해자가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재해에서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이 46.6%가 발생하였다.

● 재해 발생 시각을 보면 10시대(7.7%), 11시대(6.7%)와 오후 3시대(6.2%)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망재해는 오전 7시대에 8.7%가 발생하였으며, 오전 6시에서 8시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해 발생 요일별 분포**를 보면 월요일(16.3%)과 화요일(15.1%)에 발생 빈도가 높고, 수요일(15.0%)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 **재해 발생형태별 재해자 분포와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넘어짐(45.3%), 떨어짐(12.1%), 작업관련질병(뇌심 등)(7.4%) 순으로 재해자가 분포되어 있다. 반면, 사망자는 작업관련질병(뇌심 등)(43.5%), 떨어짐(18.0%), 넘어짐(14.9%)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다. 발생형태별 근로손실일수는 작업관련질병(뇌심 등)(1,564일), 교통사고(901일), 떨어짐(549일)순으로 나타났다.

【표】 재해 발생형태별 재해자 분포와 근로손실일수(단위: 명, %)

발생형태		재해자		근로손실일수 평균(일)	사망자	
		재해자수	점유비율		사망자수	점유비율
넘어짐		2,295	45.3%	239	24	14.9%
떨어짐		611	12.1%	549	29	18.0%
작업관련질병(뇌심 등)		377	7.4%	1,564	70	43.5%
부딪힘		329	6.5%	367	11	6.8%
폭력행위		243	4.8%	267	4	2.5%
절단·베임·찢림		241	4.8%	77	0	0.0%
기타		220	4.3%	477	10	6.2%
불균형 및 무리한동작		186	3.7%	118	0	0.0%
교통사고	사업장외	185	3.7%	397	9	5.6%
	사업장내	58	1.1%	504	2	1.2%
맞음		160	3.2%	149	1	0.6%
끼임		157	3.1%	180	1	0.6%

● **공정별 재해자 분포**에선 순찰보안(65.7%), 환경미화(17.6%), 시설관리(1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망재해에서는 순찰보안(78.9%), 시설관리(12.4%) 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정별 재해자 분포와 근로손실일수(단위: 명, %)

작업 공정	재해자		근로손실일수 평균(일)	사망자	
	인원(명)	점유비율		인원(명)	점유비율
순찰보안	3,324	65.7%	447	127	78.9%
환경미화	891	17.6%	220	11	6.8%
시설관리	600	11.9%	388	20	12.4%
고객응대	235	4.6%	244	3	1.9%
사전교육	12	0.2%	91		

● **기인물별** 재해자 분포를 보면 영구용 계단(15.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옥외바닥 및 지표면(12.2%), 옥내바닥(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재해당시 세부 작업별 재해자 분포와 근로손실일수(단위: 명, %)

기인물		재해자		근로손실일수 평균(일)	사망자	
		인원(명)	점유비율		인원(명)	점유비율
영구용계단		776	15.3%	256	10	6.2%
옥외바닥 및 지표면		620	12.2%	241	5	3.1%
옥내바닥		328	6.5%	258	5	3.1%
이동식 사다리		312	6.2%	318	5	3.1%
사람	재해자이외의타인	245	4.8%	267	4	2.5%
	재해자자신	95	1.9%	1,598	19	11.8%
통로,인도,도로		197	3.9%	180	1	0.6%
문,창문		165	3.3%	169	1	0.6%
기타·구조물의 구성요소, 부속물		78	1.5%	124		
기타		2,246	44.4%	513	111	68.9%

2. 외국(미국, 영국, 일본)의 재해현황

2.1 미국

● 미국 노동통계국(BLS): 조사 및 보안 서비스, 건물 및 주택 서비스 직종 유사재해 현황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ur Statistics : BLS) 연도별 산업재해사망통계 자료

【표】 Fatal occupational injuries by worker characteristics and event or exposur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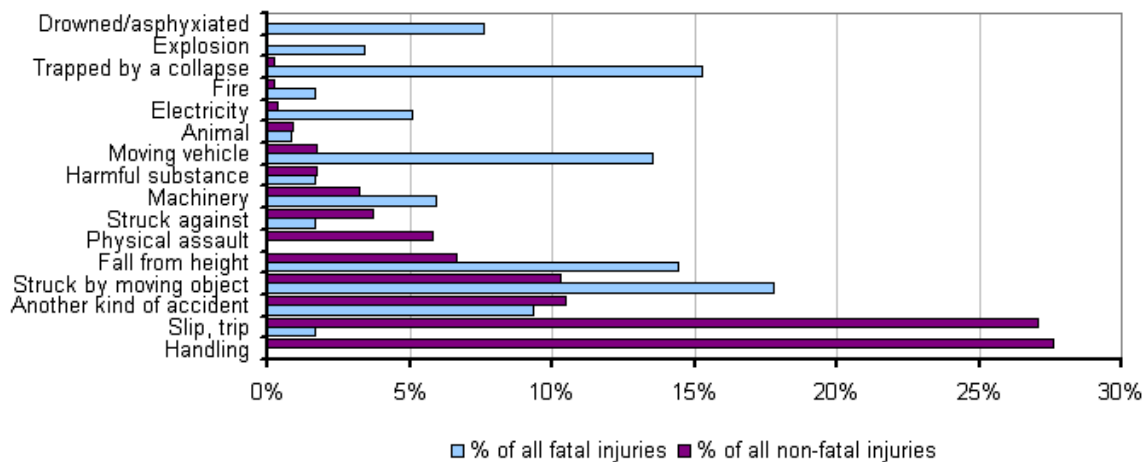
Industry	Total fatal injuries (number)	Violence & other injuries	Transportation incidents	fires & explosions	Falls, slips, trips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Contact with objects and equipment
Security guards and patrol services	31	18	6	-	5	-	1
Security systems services	4	-	-	-	-	-	-
Service to buildings and dwellings	205	9	44	-	74	36	42
Exterminating and pest control services	4	-	-	-	-	-	1
Janitorial services	17	3	3	-	6	4	-
Landscaping services	171	5	37	-	60	29	40
Other support services	6	-	-	-	3	-	-

2.2 영국(H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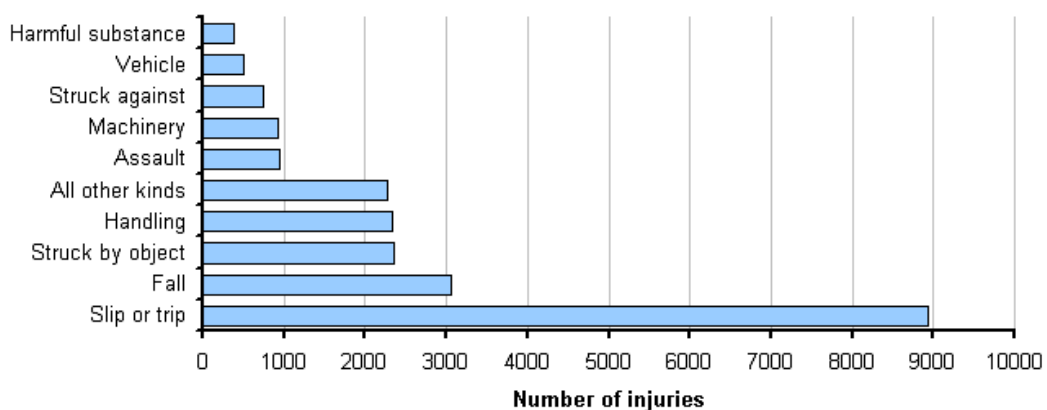
● 영국 건강안전국(HSE): 근로자의 치명적 부상 유형별 재해 현황

영국 건강안전국(Health and Safety Executive : HSE) 산업재해 통계 자료(2011-2012)

RIDDOR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그림】 Kinds of fatal and non-fatal employee injuries, 2011/12p (RIDD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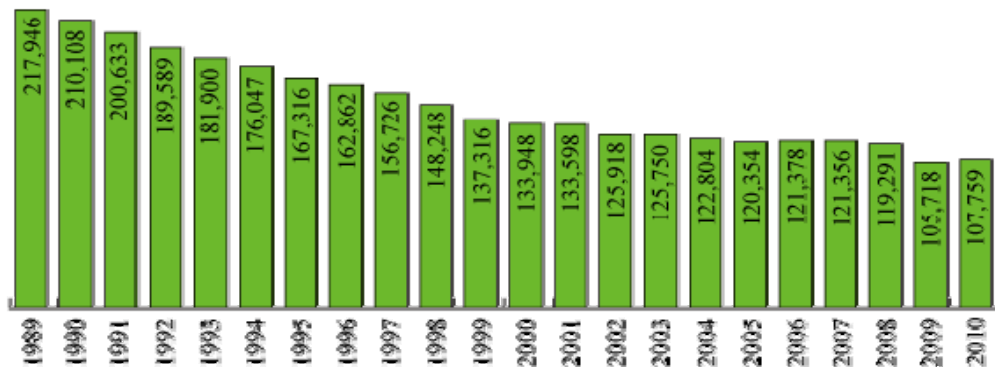


【그림】 Major injuries to employees by kind RIDDOR (2011/1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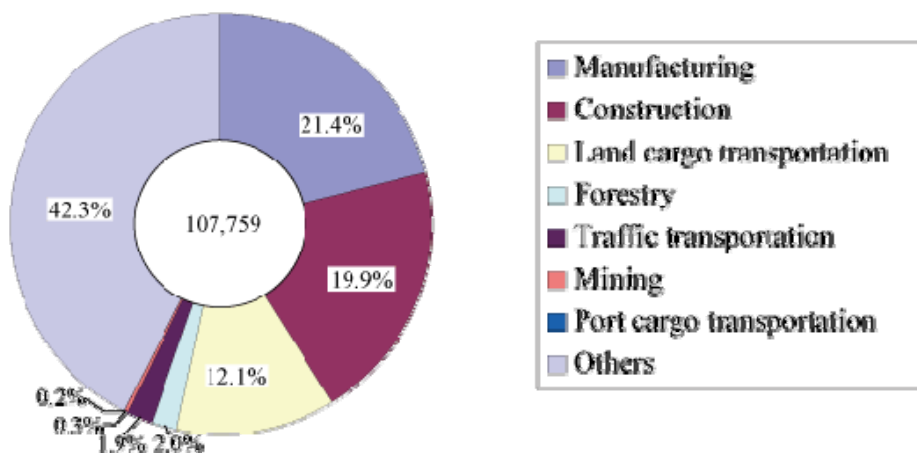
2.3 일본

●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 산업 재해(사망 및 부상) 통계 자료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ap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JISHA) 산업 재해 통계 자료(2010)



【그림】 Change in number of deaths & injuries with work absence of 4 days or more in all industries (1989-2010)



Source: Number of deaths and injuries: Data on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MHLW

【그림】 Number of deaths & injuries with work absence of 4 days or more by industrial sector(2010)

Ⅲ.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재해 예방

1. 표준 작업공정 흐름도

1.1 아파트 수위 및 경비원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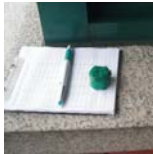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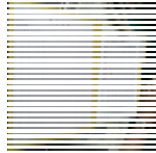
공정 명	작업 명	작업 내용
고객응대	방문객안내	-내방객 방문 시 안내
	택배/우편물관리	-택배 보관 및 등기, 소포 등 우편물에 대해 출납대장 기록 및 인도
	민원접수	-아파트단지 내 또는 각 세대 별 시설물 고장수리 등 접수
		
순찰보안	교통정리	-주변 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정리
	순찰작업	-단지 내 주변을 순찰하며 이상유무를 파악
	경비작업	-CCTV 모니터링 및 감시
		
시설관리	기기관리	-전등, 냉난방기기, 소방기기 등을 감시하고 관리
	주차관리	-단지 내 주차 관리와 불법주차 단속 및 경고문 부착
		
환경미화	미화작업	-아파트 주변 환경 정리, 잡초제거 및 나무치기
	청소작업	-각 세대 주변을 쓸고 닦음 -지하 주차장 청소, 제설작업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1.2 빌딩/공공기관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공정 명	작업 명	작업 내용
고객응대	출입자관리	-내방객 안내 및 출입자의 단속 -출입문 개폐
	우편물관리	-출판물, 등기, 소포 등 우편물 유실 및 도난 방지
	민원접수	-각 부서 근로자의 민원접수
		
순찰보안	교통정리	-빌딩/공공기관주변 교통정리
	순찰작업	-빌딩주변을 순찰하며 이상 유무 파악
	경비작업	-CCTV 모니터링 및 감시 -출입통제지역 통제
		
시설관리	기기관리	-건물 내 냉난방기기, 소방기기 등을 감시 -빌딩 내 물품의 반출입 관리
	주차관리	-빌딩 내 주차 관리 및 안내 -출입로 불법주차 통제
		
환경미화	미화작업	-빌딩/건물주변 정화 및 정리
	청소작업	-건물주변을 쓸고 닦음 -주 출입로 및 주변 정소

2. 공정별 위험요인 및 주요 재해사례

2.1 아파트 수위 및 경비원 직종관련 작업의 위험요인

공정 명	작업 명	사용 도구/설비	노출 위험요인
고객응대	방문객안내	(인력작업)	• 작업관련질병(뇌심)
	택배/우편물관리	  출납대장 / 장갑	• 무리한 자세 • 중량물에 의한 요통
	민원접수	  필기구 / 접수대장	• 작업관련질병(뇌심)



순찰보안	교통정리	   호루라기 / 경광등 / 경광봉	• 교통사고 • 미끄러짐(전도)
	순찰작업	   손전등 / 무전기 / 호루라기	• 미끄러짐(전도) • 떨어짐(추락) • 작업관련질병(뇌심)
	경비작업	 CCTV	• 폭력행위 • 작업관련질병(뇌심)



시설관리	기기관리	 소방기구/냉난방기구/ 전기기구 등	• 떨어짐(추락) • 끼임(협착) • 화재 • 감전
	주차관리	 차량일지 / 주차차단기	• 미끄러짐(전도) • 부딪힘(충돌) • 끼임(협착) • 작업관련질병(뇌심)



환경미화	미화작업	 호미/괭이/삽/예초기/낫/톱/ 전지가위/사다리 등	• 떨어짐(추락) • 미끄러짐(전도) • 절단, 베임, 찢림 • 무리한 자세
	청소작업	 빗자루/쓰레받기/대걸레/ 제설도구/염화칼슘	• 미끄러짐(전도) • 작업관련질병(뇌심) • 화학물질 중독, 질식 • 무리한 자세
	분리수거	 장갑/호스/마대/집게/수세미	• 절단, 베임, 찢림 • 중량물에 의한 요통 • 병원체 감염, 질식

2.2 빌딩/공공기관 수위 및 경비원 직종관련 작업의 위험요인

공정 명	작업 명	사용 도구/설비	노출 위험요인
고객응대	출입자관리	(인력작업)	- 끼임(협착) - 작업관련질병(뇌심)
	우편물관리	  출납대장 / 장갑	- 무리한 자세 - 중량물에 의한 요통
	민원접수	  필기구 / 접수대장	작업관련질병(뇌심)



순찰보안	교통정리	   호루라기 / 경광등 / 경광봉 /  주차금지 표지판 등	- 교통사고 - 미끄러짐(전도)
	순찰작업	   손전등 / 무전기 / 호루라기   경광봉 / 가스총 /   자전거/오토바이 등	- 미끄러짐(전도) - 떨어짐(추락) - 작업관련질병(뇌심)
	경비작업	   CCTV/무전기/호루라기/   경광봉 / 가스총 / 등	- 폭력행위 - 작업관련질병(뇌심)



시설관리	기기관리	 소방기구/냉난방기구/ 전기기구 등	• 떨어짐(추락) • 끼임(협착) • 화재 • 감전
	주차관리	 차량일지/주차차단기/주차시설	• 미끄러짐(전도) • 떨어짐(추락) • 끼임(협착) • 작업관련질병(뇌심)



환경미화	미화작업	 호미/괭이/삽/예초기/낫/톱/ 전지가위/사다리 등	• 떨어짐(추락) • 절단, 베임, 찔림 • 무리한 자세 • 미끄러짐(전도)
	청소작업	 빗자루/쓰레받기/대걸레/ 제설도구/염화칼슘	• 미끄러짐(전도) • 뇌심, 중독, 질식 • 무리한 자세 • 중량물에 의한 요통

2.3 수위 및 경비원 직종관련 작업의 주요 재해사례

1. 택배/우편물 관리 중 재해사례

1. 무거운 택배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성 요통재해를 당함

○ 재해개요

6월 중순 오전 10시경 임시 택배 보관소의 택배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무거운 택배 물건을 들기 위해 힘을 주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사고성 요통 재해를 당함.

2. 택배 물건을 전달하던 중에 출입문이 닫히면서 손가락이 골절됨

○ 재해개요

출입문을 열고 택배 물건을 수취인에게 전달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출입문이 바람에 닫히면서 오른손을 가격하여 손가락이 골절되고 표피가 떨어짐.

3. 택배 물건을 들고 이동하던 중에 바닥 돌출부에 걸려 넘어짐

○ 재해개요

10월 하순 오후 3시경 택배 물건을 손으로 들고 택배 보관소로 이동하던 중 이동 경로의 바닥 돌출부에 걸려 넘어져 다침.

○ 유사재해

- 무거운 택배 물건을 손으로 들고 이동할 때 아스팔트 턱에 걸려 넘어짐.
- 1월 겨울에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우편물을 들고 이동하던 중에 녹은 눈이 언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침.

2. 순찰작업 중 재해사례

1. 아파트와 주차장 건물사이 외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함

○ 재해개요

재해자가 휴게실(지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오전 3시경에 근무지 초소로 가기 위해 근무복, 손전등, 호루라기 등 경비 용품을 챙겨 들고 건물 외부 계단을 올라감. 계단 상부에 다다를 무렵 3-4단 정도에서 뒷꿈치 부분을 구겨신은 신발에서 발이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계단에 부딪쳐 뇌출혈로 인해 사망함.

○ 유사재해

평소 고혈압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격일 근무로 인해 몸에 무리가 되어 계단에서 이동하던 중 뇌졸중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넘어짐.

2. 아파트 지하주차장 순찰 중에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재해개요

5월 초순 오후 10시경 공동주택단지 내 지하주차장 순찰 중에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엔진오일 등의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져 크게 다침.

3.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동 중에 신발 끈을 밟아 계단에서 넘어짐

○ 재해개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동하던 중에 풀린 자신의 신발끈을 밟아서 계단에서 넘어져 재해를 당함.

4. 겨울철에 빌딩 현관 앞 언 바닥에서 미끄러짐

○ 재해개요

청소원이 빌딩 현관 앞 청소를 마친 후 순찰을 위해 나서던 중 추운 날씨로 인해 바닥이 언 것을 모르고 이동하다 미끄러짐.

5. 빌딩 현관 앞 투명유리 착시로 인해 자동문에 크게 부딪힘

○ 재해개요

민원 신고를 받고 빌딩 외부로 나서기 위해 빌딩 현관 앞을 지나다가 투명유리 자동문이 열려 있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급하게 이동 중 자동문에 부딪혀 뇌진탕을 일으키는 재해를 당함,

6. 단지 순찰 도중에 화학물질을 치우다가 노출 및 화상을 당함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순찰하던 도중에 길가에 버려진 화학물질 등을 치우다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화상을 입는 재해를 당함,

○ 유사재해

단지 주변에 놓인 청소약품과 같은 화학물질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셔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함,

3. 교통정리 중 재해사례

1. 아파트 입구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과속 차량에 치임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아침 교통정리를 하던 김OO씨는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치는 재해를 당함.

2. 교통정리를 하던 중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짐

○ 재해개요

평소 고혈압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격일 근무로 인해 몸에 무리를 느끼던 이OO씨가 겨울철 이른 아침 교통정리를 하던 중 뇌졸중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짐.

3. 차량 통제용 설치물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요통 재해를 입음

○ 재해개요

빌딩에 출입하는 차량들을 통제하기 위한 무거운 설치물을 옮기려고 힘을 주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사고성 요통 재해를 당함.

○ 유사재해

빌딩 주변 주차 금지를 위한 설치물과 안내표지판을 옮기기 위해 힘을 주던 중에 허리가 뜨끔하며 요통이 발생함.

4. 기기관리 중 재해사례

1. 빌딩 내에 이상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던 중 떨어짐

○ 재해개요

빌딩 내에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아서 전문가를 기다리던 중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살펴보다가 실수로 아래층으로 떨어짐.

2. 출입구 통로 천정의 전등을 교체하다가 전구 파편에 찔림

○ 재해개요

건물 출입구 통로 등 공동사용구역의 천정에 설치된 전등을 교체하다가 전구 및 형광등이 깨져서 그 파편에 찔리는 재해를 당함.

○ 유사재해

빌딩 내 자동 현관문 상태를 점검하던 중에 상판 덮개가 떨어져서 얼굴을 다치는 부상을 입음.

3. 고장 난 주차 기계를 살피던 중 상의가 주차기계 체인에 끼임

○ 재해개요

빌딩 내 기계식 주차 기계의 오작동으로 기계가 멈춘 상황에서 이상 유무를 살피기 위해 전원을 넣고 작동시키다가 입고 있던 상의 뒷부분이 주차기계 체인에 끼여 재해를 당함.

5. 주차관리 중 재해사례

1. 빌딩 내 작동 중인 기계식 주차설비에 끼여 사망함

○ 재해개요

빌딩 내 작동중인 기계식 주차설비에 설치된 조작실에서 주차용 파렛트에 입차된 승용차를 주차위치로 이동시키고 다음 승용차의 주차를 위해 공 파렛트를 내리던 중 하강하는 리프트의 프레임과 바닥 사이에 끼여 사망함.

2. 주차차단기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짐

○ 재해개요

업무 특성상 고령의 남자 근로자가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격일 근무로 인해 수면 부족, 신체적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몸에 무리를 느끼던 상황에서 아파트 주차차단기 출입구(Gate)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뇌졸중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짐.

3. 안내 표지판을 옮기던 중 표지판을 손에서 놓쳐 사고를 당함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각종 안내 표지판을 대차를 이용하여 옮기던 중에 안내표지판을 놓쳐 무릎과 발에 부상이 발생함.

6. 미화작업 중 재해사례

1. 단지 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짐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 내 미화를 위해 사다리와 톱을 이용하여 높은 나무의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 힘을 쓰던 중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입음.

2. 아파트 단지 내에 미화 작업 중 과속 주행 중인 오토바이에 치임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가운데 위치한 커다란 이동식 화분을 정리하는 미화 작업 중에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함.

3. 아파트 단지 내 화단주변의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칼날에 베임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주변의 풀을 깎기 위해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칼날에 손을 베이는 사고를 당함.

○ 유사재해

예초기를 사용하여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칼날을 교체하기 위해 조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시동을 걸다 칼날에 베이는 재해를 입음.

4. 공동주택 단지의 지붕에서 미화작업 중 미끄러져 떨어짐

○ 재해개요

공동주택 단지의 지붕 등 높은 곳에서 미화 작업을 하던 중에 지붕면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를 당함.

5. 아파트 단지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중 돌이 튀어 얼굴을 다침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에서 화단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하던 중 돌 및 모래가 튀어 올라 눈과 얼굴을 다치는 사고를 당함.

6. 아파트 단지 내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놓쳐서 손이 끼임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맨홀 뚜껑을 점검하기 위해 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놓쳐서 손이 끼이는 부상을 당함.

7. 손수레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던 중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짐

○ 재해개요

건물 내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제설용 모래와 염화칼슘을 싣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과속방지턱에 걸려 무거운 물건과 함께 넘어짐.

7. 청소작업 중 재해사례

1. 환기구 덮개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지하층 아래로 떨어져 사망

○ 재해개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환기구 덮개 아래 이물질 수집망에 쌓인 담배꽂이를 치우던 중, 좀 먼 곳에 있는 쓰레기를 집으려고 손을 뻗치다 너무 멀어 수집망을 밟고 서는 순간 수집망은 경비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 유사재해

지하주차장 환기구 주변을 청소한 후, 무거운 환기구 덮개를 혼자서 씌우던 중 환기구 덮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 1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함.

2. 건물 앞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중에 연 바닥에서 미끄러짐

○ 재해개요

건물 현관 앞 계단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중에 대리석으로 된 계단 위에서 미끄러져 재해를 당함.

3. 빌딩 현관 위의 비둘기 배설물을 제거하던 중 떨어짐

○ 재해개요

빌딩 현관 위의 비둘기 배설물을 치우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배설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균형을 잃어서 떨어져 재해를 당함.

8. 분리수거 작업 중 재해사례

1. 분리수거 작업 중 강통 및 유리조각 등에 손을 베이거나 찔림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 분리 수거된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통조림 강통 및 깨진 유리조각 등에 의해 손을 베이는 재해를 당함.

○ 유사재해

아파트 단지 입주자가 버린 폐기물 가구 등에 붙어있는 거울 및 유리를 깨다 유리 및 거울 파편에 얼굴, 손 등을 다침.

2. 재활용품 정리작업 중 비닐봉지에 미끄러짐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던 중에 박스 밑에 깔려있던 비닐봉지 등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함.

3. 음식물 쓰레기통을 밀고 이동하다 아스팔트 턱에 걸려 넘어짐

○ 재해개요

아파트 단지 음식물 쓰레기통 등을 들고 이동하다가 아스팔트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3. 세부공정별 위험성평가

3.1 위험의 정의

○ 사고의 중대성(강도)

강도 수준	설 명
대	사망, 중대한 상해,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성질병 초래위험 (절단, 큰 골절, 복합 상해, 작업성암, 급성 중독 등)
중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열상, 화상, 작은 골절, 피부염, 귀먹음, 작업관련성 근골)
소	아차사고, 무상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질병 초래위험 (타박상, 염증, 일시적인 불편함에서 오는 질병 등)

○ 발생가능성(빈도)

빈도 수준	설 명
고	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
중	발생 가능성 있음
저	거의 없음

○ 사고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3)	중(2)	소(1)
고(3)	중대(9)	중대(6)	미미(3)
중(2)	중대(6)	경미(4)	미미(2)
저(1)	미미(3)	미미(2)	미미(1)

○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리 기준	권장 활동 및 방법
중대 (6~9)	즉시 개선	•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고위험수준을 적어도 중간 위험정도로 줄여야 함 • 임시 위험관리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위험관리 방법은 개인보호구 또는 설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되며 공학적인 방법이 우선되어야 함 • 가급적 위험원은 작업시작 전에 제거해야 함 • 작업시작 전부터 관리자에 의한 작업 단계별 관리가 요구되어 짐
경미 (4)	개선	• 부여된 작업 환경 내에서 위험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주의 깊은 위험성 평가 필요 • 표지 및 작업 절차 등 관리적 위험관리 방법의 실행이 부분적으로 필요 • 작업부하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 및 조치가 필요
미미 (1~3)	현재 유지	• 부가적인 위험관리 방법은 필요하지 않으나, 평가된 위험수준이 정확하도록 자주 검토되어야 함

3.2 공정별 위험성 평가

공정	작업	사고 빈도		사고 강도	
		빈도	빈도 수준	근로손실일수	강도 수준
아파트	고객응대	6.3%	저	221	중
	사전교육	0.1%	저	124	소
	순찰보안	57.9%	고	391	대
	시설관리	10.6%	중	396	대
	환경미화	25.1%	고	229	중
빌딩	고객응대	3.0%	저	298	중
	사전교육	0.4%	저	80	소
	순찰보안	72.9%	고	472	대
	시설관리	13.4%	중	386	대
	환경미화	10.3%	중	198	소
건설현장	고객응대	1.0%	저	104	소
	사전교육		—	—	—
	순찰보안	89.1%	고	885	대
	시설관리	5.9%	저	111	소
	환경미화	4.0%	저	154	소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3)	중(2)	소(1)
고(3)	중대(9) 아파트-순찰보안 빌딩-순찰보안 건설-순찰보안	중대(6) 아파트-환경미화	미미(3)
중(2)	중대(6) 아파트-시설관리 빌딩-시설관리	경미(4)	미미(2) 빌딩-환경미화
저(1)	미미(3)	미미(2) 아파트-고객응대 빌딩-고객응대	미미(1) 아파트-사전교육 빌딩-사전교육 건설-고객응대/ 시설관리/환경미화

3.3 공정별 위험성평가

○ 평가 대상공정 : 1. 고객응대

① 고객응대					
					
					
연번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1-①-1	•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작업성 스트레스				
1-①-2	• 불특정 대중상대 감정노동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				
1-①-3	• 2조 맞교대 근무형태, 노령, 노동 강도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				
1-①-4	• 대형택배 등 중량물 취급방법 부적절로 인한 요통재해 위험				
1-①-5	• 사무소, 관리부스 출입 중 문턱 등에 걸려 넘어질 위험				
1-①-6	• 의자에 앉아 줄다가 의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힘 위험				
1-①-7	• 내부 온풍기, 선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				
1-①-8	• 고온, 저온 근무환경에 의한 탈진, 저체온증 재해 위험				

○ 평가 대상공정 : 2. 순찰 보안

① 교통정리					
					
					
연번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2-①-1	• 지속적인 자동차 배기가스(CO, SO ₂ 등) 폭로 위험				
2-①-2	• 교통신호 무시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				
2-①-3	• 횡단보도와 도로턱 등 요철부위에서 넘어짐 재해 위험				
2-①-4	• 개방된 맨홀 등에서 떨어짐 위험				
2-①-5	• 야간 야광 식별조끼 등 미착용 작업 중 교통사고 위험				
2-①-6	• 과적차량 등에서 낙하된 적재물이 날아오는 위험				
2-①-7	• 출입구 도로에 안전 교통 표지판 미부착에 의한 재해 위험				
2-①-8	• 출입도로에 안전 블록,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위험				

② 순찰작업



연번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2-②-1	• 미끄러운 건물바닥 확인 미흡으로 넘어지는 재해 위험				
2-②-2	• 밖으로 열리는 출입문, 셔터문 등에 부딪힘 위험				
2-②-3	•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순찰 중 넘어짐, 부딪힘 위험				
2-②-4	• 주차 또는 출차 차량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 접촉 위험				
2-②-5	• 건물 유리창, 베란다 화분 등의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				
2-②-6	• 무더운 온도 또는 추운 온도에 의한 탈진, 동상, 저체온증 위험				
2-②-7	• 순찰 중 계단, 추락위험 단부에서 떨어질 위험				
2-②-8	• 강도 등 폭행 및 상해에 노출될 위험				
2-②-9	• 어두운 실내조명에 의한 순찰 중 넘어짐 및 부딪힘 위험				
2-②-10	• 구겨 신은 신발/자신의 풀린 신발 끈 등에 의해 넘어질 위험				
2-②-11	• 단독 순회 순찰에 의한 사고 및 비상사태 시 대처미흡				

③ 경비작업

    					
연번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2-③-1	• 미끄러운 경비실 바닥에 의한 미끄러짐 위험				
2-③-2	• 의자에 앉아 졸다가 의자 넘어질 위험				
2-③-3	• 가스총 오 격발에 의한 유해가스 흡입 위험				
2-③-4	• 장기간 CCTV모니터링에 의한 목부위 근육 손상 위험				
2-③-5	• 경비실 출입 중 문턱 등에 걸려 넘어질 위험				
2-③-6	• 무더운 온도 또는 추운 온도에 의한 탈진, 동상, 저체온증 위험				
2-③-7	• 온방 및 냉방기구의 가열, 오조작에 의한 화재 위험				
2-③-8	• 라면 등 취사도구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2-③-9	• 단독 순회 순찰에 의한 사고 및 비상사태 시 대처 미흡				
2-③-10	• 수면장애, 불규칙한 생활, 무리한 근무 등으로 인한 작업관련질병(뇌심) 발생위험				

○ 평가 대상공정 : 3. 시설관리

① 기기관리					
					
					
연번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3-①-1	• 가반식 전동기계기구(핸드릴, 그라인더)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3-①-2	• 엘리베이터 도어 개방 후 상태 확인 중 피트에 떨어짐 위험				
3-①-3	• 소화전함 관창 및 소방호스 등 중량물 취급부주의로 인한 요통재해 위험				
3-①-4	• 소화기 운반 도중 낙하에 의한 발등 재해 위험				
3-①-5	•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복도 전등 교체작업 중 추락 위험				
3-①-6	• 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등 고용조명기구 교체 중 파손에 의한 맞음 위험				
3-①-7	• 설비관리를 위한 확인 중 계단,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짐 재해 위험				
3-①-8	• 펌프 등 위험부 근접에 의한 말림 재해 위험				
3-①-9	• 개방된 맨홀, 집수조 등 위험부에서 부주의로 인한 떨어질 위험				
3-①-10	• 옥외노후배선, 절연이 불량한 이동전선 사용 중 감전위험				

② 주차관리



연번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3-②-1	• 협소한 주차공간에서의 차량안내 및 유도로 인한 부딪힘 위험				
3-②-2	• 미끄러운 주차장 바닥 또는 고르지 못한 주차장 바닥에 의해 넘어지는 위험				
3-②-3	• 폭주 및 급가속 차량 등에 의한 추돌 위험				
3-②-4	• 지속적인 자동차 배기가스(CO, SO ₂ 등) 폭로 위험				
3-②-5	• 중량물인 주차금지 표지석 무리한 운반에 의한 요통재해 위험				
3-②-6	• 차량 전면부착 주차위반 스티커의 칼날을 이용한 제거 중 베임 위험				
3-②-7	• 주차관련 몸싸움 등 폭력에 의한 재해 위험				
3-②-8	• 야간 부정주차 차량확인 중 넘어짐 및 구조물에 부딪힘 위험				
3-②-9	• 기계식 주차 설비 취급 및 대응 매뉴얼 부재에 의한 오작동 등 사고 위험				
3-②-10	• 야간 식별조끼 등 교통안전장구 미착용에 의한 위험				

○ 평가 대상공정 : 4. 환경미화

① 미화작업					
					
연번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4-①-1	•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정원수 전지작업 중 떨어짐 위험				
4-①-2	• 식재를 위한 구덩이 조성작업 중 무리한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①-3	•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잡초 제거 작업에 의한 요추부 재해 위험				
4-①-4	• 폭설 폭우 시 출입구 제설 및 배수 불량에 의한 미끄러짐				
4-①-5	• 사다리위 등 불안정한 자세로 톱질 등 작업 중 균형상실로 떨어짐 위험				
4-①-6	• 자재 등 중량물 운반 및 취급방법 불량으로 요통 및 근골격계 질환위험				
4-①-7	• 가지치기 작업에 의해 절단 부위에 눈 등 신체부위 찔릴 위험				
4-①-8	• 담위 등 고소부 작업 중 떨어짐 위험				
4-①-9	• 맨홀 뚜껑 개방 시 부적절한 수공구 사용에 의한 재해 위험				
4-①-10	• 예초기 안전장치 제거 사용 등 취급 부주의에 의한 재해 위험				

② 청소작업

    					
연번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4-②-1	• 청소작업 중 물기에 의한 넘어짐 재해 위험				
4-②-2	• 이동식 전기릴의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4-②-3	• 청소작업 중 바닥 장애물 방치로 인한 걸려 넘어질 위험				
4-②-4	• 동절기 제설작업 중 빙판에 미끄러질 위험				
4-②-5	• 깨진 유리병, 철사 등 날카로운 쓰레기 포장작업 중 찔릴 위험				
4-②-6	• 25kg가 넘는 쓰레기더미 운반 작업 중 작업성 요통 위험				
4-②-7	• 빗자루를 이용한 반복청소 작업(트위스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②-8	• 낙엽 등 소각작업 중 소형 LP가스통 폭발 등 화재에 의한 재해 위험				
4-②-9	• 지하주차장 청소작업 중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인 노출위험				
4-②-10	• 아파트나 건물 등의 환기구 덮개에서 청소 작업 시 안전 도구/안전 장치 미사용				
4-②-11	• 청소작업 중 사다리 이용 및 취급 부주의에 의한 재해위험				

③ 분리수거(아파트수위 및 경비원에 해당)



연번	위험요인	현재의 안전조치	위험성 평가 결과		
			중대성	가능성	위험성
4-③-1	• 중량물 취급방법 미준수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4-③-2	• 이동식 집게 크레인을 이용한 반출작업 중 중량물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				
4-③-3	• 깨진 병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 포장 중 찢릴 위험				
4-③-4	• 분리수거장 바닥 장애물에 의한 분리작업 중 넘어짐 위험				
4-③-5	• 대형 폐가전제품 이동작업 중 요통재해 및 끼임 재해 위험				
4-③-6	• 음식물 쓰레기 부패에 의한 병원체 감염 위험				
4-③-7	• 음식물 분리수거통 운반 중 전도 및 요통재해 위험				
4-③-8	• 분리수거 작업 중 안전 도구(장갑, 집게 등) 미사용에 의한 재해 위험				
4-③-9	• 재활용품 수거차량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미비로 재해 위험				

3.4 세부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

공정명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대 책
1. 고객 응대	① 출입자관리 ② 우편물관리 ③ 민원접수	• 협소한 공간에서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작업성 스트레스 • 불특정 대중상대 감정노동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 • 2조 맞교대 근무형태, 노령, 노동강도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위험 • 대형택배 등 중량물 취급방법 부적절로 인한 요통재해 위험 • 사무소, 관리부TM 출입 중 문턱 등에 걸려 넘어질 위험 • 의자에 앉아 줄다가 의자 넘어짐에 의한 두부 부딪힘 위험 • 내부 온풍기, 선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 • 고온, 저온 근무환경에 의한 탈진, 저체온증 재해 위험	• 주기적인 스트레칭 및 외부 신선한 공기 환기 조치 • 감정노동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교육 및 대처방안 교육 실시 • 주기적인 휴식시간 부여 및 교대방법 개선 •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 사무소, 관리부스 출입구 문턱 등 불안정한 요소 사전제거 • 급속히 줄릴 경우 소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가면 실시 • 온풍기, 선풍기 등 발열성 전기제품 장시간 사용금지 • 근무처에 대한 냉방, 온방 조치 시행
	①교통정리	• 지속적인 자동차 배기가스(CO, SO2 등) 폭로 위험 • 교통신호 무시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 • 횡단보도와 도로턱 등 요철부위에서 넘어짐 재해 위험 • 개방된 맨홀 등에서 추락 위험 • 야간 야광 식별조끼 등 미착용 작업 중 교통사고 위험 • 과적차량 등에서 낙하된 적재물 맞음 위험 • 아파트/빌딩/공공기관 출입구 도로에 안전 교통 표지판 미부착에 의한 재해위험 • 출입도로에 안전 블록,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위험	• 도로에 장시간 체류 시 방진마스크 착용 • 주위상황에 대한 경계 강화 • 통행 시 도로상태 확인철저 • 맨홀 등 추락 위험부는 접근금지표지판 설치 및 근접 시 이상 유무 확인 • 야간 야광 식별조끼 착용 • 과적차량 등 위험차량 접근금지 • 아파트/빌딩/공공기관 출입구 도로에는 규정속도, 과속금지, 서행 등 안전 교통 표지판 부착 • 출입도로에 안전 블록,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
2. 순찰 보안	② 순찰작업	• 미끄러운 건물바닥 확인 미흡으로 미끄러짐 재해 위험 • 밖으로 열리는 출입문, 셔터문 등에 부딪힘 위험 •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순찰 중 넘어짐, 부딪힘 위험 • 주차 또는 출차 차량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 접촉 위험 • 건물 유리창, 베란다 화분 등의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 • 무더운 온도 또는 추운 온도에 의한 탈진, 동상, 저체온증 위험 • 순찰 중 계단, 추락위험 단부에서 떨어짐 위험 • 강도 등 폭행 및 상해에 노출될 위험 • 어두운 실내조명에 의한 순찰 중 미끄러짐 및 부딪힘 위험	• 통행중 바닥상태 확인 철저 및 불안정한 장소는 사전에 청소 • 출입문 등 접근 시 무리한 진입 금지 출입문 회전반경 밖에서 대기 • 서행운전 및 방어 운전 실시 • 주차장 출구 등 위험장소는 접근 전 출자경고등을 확인하고 접근 • 순찰 시에는 통행로뿐만 아니라 수시로 상부 위험상태도 확인 • 적정 휴식시간 보장 및 기후에 맞는 단정한 복장 착용 • 계단은 난간을 잡고 통행하고 추락 위험 단부는 접근금지 • 가급적 2인 1조로 순찰토록하고 단독 순찰시 무전기 등 통신설비 휴대 후 순찰 • 야간 순찰시 조명기구 휴대

공정명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대 책
2. 순찰 보안	② 순찰작업	- 구겨 신은 신발/자신의 풀린 신발 끈 등에 의해 넘어짐 위험 - 단독 순회 순찰에 의한 사고 및 비상사태 시 대처 미흡	- 신발,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신발끈은 단단히 조여 매도록 한다. - 가급적 2인 1조로 순찰토록하고 단독 순찰시 무전기 등 통신설비 휴대 후 순찰
	③ 경비작업	- 미끄러운 경비실 바닥에 의한 미끄러짐 재해 위험 - 의자에 앉아 졸다가 의자 넘어짐에 의한 두부 부딪힘 위험 - 가스총 오격발에 의한 유해가스 흡입위험 - 장기간 CCTV모니터링에 의한 목부위 근육 손상위험 - 경비실 출입 중 문턱 등에 걸려 넘어질 위험 - 무더운 온도 또는 추운 온도에 의한 탈진, 동상, 저체온증 위험 - 온방 및 냉방기구의 가열, 오조작에 의한 화재위험 - 라면 등 취사도구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 - 단독 순회 순찰에 의한 사고 및 비상사태 시 대처 미흡 - 수면장애, 불규칙한 생활, 무리한 근무 등으로 인한 작업관련질병(뇌심) 발생위험 증가	- 미끄러운 바닥은 매트 설치 - 급속한 줄음 시 소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가면 실시 - 가스총 노리쇠 안전장치 체결 - CCTV모니터링 시 주기적인 목운동 등 스트레칭 실시 - 턱이 높은 문턱 등은 사전 보완조치 - 주기적인 휴식 및 기후에 적합한 복장 착용 - 온풍기, 선풍기 등 발열성 전기제품 장시간 사용금지 -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안전장치 확인 및 폭이 넓어 열이 반사되는 취사도구 사용금지 - 가급적 2인 1조로 순찰토록하고 단독 순찰 시 무전기 등 통신설비 휴대 후 순찰 - 주기적인 휴식시간 보장,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스트레칭, 개인운동 실시
3. 시설 관리	① 기기관리	- 가반식 전동기계기구(핸드드릴, 그라인더) 사용 중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 - 엘리베이터 도어 개방 후 상태 확인 중 피트에 떨어짐 위험 - 소화전함 관창 및 소방호스 등 중량물 취급부주의로 인한 요통재해 위험 - 소화기 운반도중 낙하에 의한 발등 재해 위험 -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복도 전등 교체작업 중 떨어짐 위험 - 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등 공용조명기구 교체 중 파손에 의한 맞음 위험 - 설비관리를 위한 확인 중 계단,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넘어짐 재해위험 - 펌프 등 협착 위험부 근접에 의한 말림 재해 위험 - 개방된 맨홀, 집수조 등 추락 위험부에서 부주의로 인한 떨어짐 재해 위험 - 옥외 노후배선, 절연이 불량한 이동전선 릴 사용 중 감전 위험	-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사용 전 절연상태, 전선 상태에 대한 확인 실시 - 엘리베이터 도어는 임의 개방금지 및 전문가에 의한 보수 및 수리 -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 소화기는 운반손잡이를 잡고 2개 이상 운반금지 - 이동식 사다리는 2인 1조로 작업하고 사다리 위에서 무리한 동작 금지 - 조명기구 전구교체 시 무리한 작업 금지 및 대형 기구의 경우 보안경 착용 - 계단은 손잡이를 잡고 통행하고 통행로 바닥에 대한 확인 후 통행 - 협착위험부에 방호 조치 및 경고 표지판 설치 - 맨홀, 집수조 뚜껑은 상시 닫힌 상태로 운영하고 개방 시 위험표지 설치 및 접근 금지 조치 실시 - 옥외 노후배선, 이동전선 릴은 전원을 차단 후 절연테이핑 등 안전조치 후 사용

공정명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대 책
3. 시설 관리	②주차관리	• 협소한 주차공간에서의 차량안내 및 유도로 인한 부딪힘 위 • 미끄러운 주차장 바닥 또는 고르지 못한 주차장 바닥에 의한 미끄러짐 위험 • 폭주 및 급가속 차량 등에 의한 부딪힘 위험 • 지속적인 자동차 배기가스(CO, SO2 등) 폭로위험 • 중량물인 주차금지 표지석 무리한 운반에 의한 요통재해 위험 • 차량 전면부착 주차위반 스티커의 커터날을 이용한 제거 중 베임 위험 • 주차관련 몸싸움 등 폭력에 의한 재해 위험 • 야간 부정주차 차량확인 중 넘어짐 및 구조물에 부딪힘 위험 • 기계식 주차 설비 취급 및 대응 매뉴얼 부재에 의한 오작동 등 사고 위험 • 야간 식별조끼 등 교통안전장구 미착用に 의한 위험	• 차량안내 및 유도 시 안전한 위치에서 실시 • 바닥 오일 등은 수시로 청소하고 통행 장애물은 발견 즉시 정리 정돈 실시 • 주위 상황에 대한 습관적인 확인의식 배양 •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가급적 신선한 외기가 들어오는 덕트 밑에 위치 •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 스티커 제거를 위해 커터날만 사용은 금지하고, 제거용 용제 등을 사용 안전하게 제거 • 통신설비 휴대, 경찰연락 등을 통해 직접적인 폭력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 • 야간 부정주차 차량확인 시 조명기구 휴대 및 장애물 확인 철저 • 기계식 주차 설비 취급 및 대응 매뉴얼 구비 및 사용교육 실시 • 야간 식별조끼 등 교통안전장구 착용
4. 환경 미화	①미화작업	•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정원수 전지작업 중 떨어짐 위험 • 식재를 위한 구덩이 조성작업 중 무리한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잡초제거 작업에 의한 요추부재해 위험 • 폭설 폭우 시 출입구 제설 및 배수 불량에 의한 미끄러짐 • 사다리위 등 불안정한 자세로 톱질 등 작업 중 균형상실로 떨어짐 위험 • 자재 등 중량물 운반 및 취급방법 불량으로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 위험 • 가지치기 작업에 의해 절단 부위에 눈 등 신체부위 찢릴 위험 • 담위 등 고소부 작업 중 떨어짐 위험 • 맨홀 뚜껑 개방 시 부적절한 수공구 사용에 의한 재해위험 • 예초기 안전장치 제거 사용 등 취급부주의에 의한 재해 위험	• 이동식 사다리는 2인 1조로 작업하고 견고히 고정 후 무리한 동작 금지 • 무리한 작업 금지 및 휴식시간 부여 •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장시간 작업금지 및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 신속한 제설 및 배수와 위험장소 접근 금지 • 사다리위에서 가급적 3점 이상을 기대어 몸 균형 상실을 예방 • 중량물 운반 및 취급방법 준수 • 가지치기 작업 시 보안경, 장갑 착용 • 담위 등 고소부 작업 시에는 안전한 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실시 • 맨홀 뚜껑 개방 시 적절한 수공구 사용 • 예초기 날보호덮개, 비레 방지판 해체 사용 금지

공정명	작업명	유해·위험요인	대 책
4. 환경 미화	②청소작업	• 청소작업 중 물기에 의한 미끄러짐 재해 위험 • 이동식 전기릴의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청소작업 중 바닥 장애물 방치로 인한 걸려 미끄러짐 위험 • 동절기 제설작업 중 빙판에 미끄러짐 위험 • 깨진 유리병, 철사 등 날카로운 쓰레기 포장작업 중 찔릴 위험 • 25kg가 넘는 쓰레기더미 운반 작업 중 작업성 요통 위험 • 빗자루를 이용한 반복청소 작업(트위스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낙엽 등 소각작업 중 소형 LP가스통 폭발 등 화재에 의한 재해 위험 • 지하주차장 청소작업 중 오염된 공기 에 지속적인 노출위험 • 아파트나 건물 등의 환기구 덮개에서 청소 작업 시 안전 도구/안전 장치 미사용 • 청소작업 중 사다리 이용 및 취급 부주의에 의한 재해 위험	• 물기는 바로 제거하고 후방으로 청소 작업 진행 • 작업 전 이동식 전기릴의 절연피복상 태 확인 및 절연테이핑 조치 실시 • 바닥 장애물은 즉시 정리 정돈 •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및 주의 • 쓰레기 포장작업 중 내용물 확인 철 저 및 장갑 착용 • 중량물 취급 및 운반방법 준수 • 주기적인 휴식 및 스트레칭 실시 • 소각작업 중 LP가스통, 모기약제통등 폭발 위험물질 혼입방지 및 사전제거 • 규칙적인 휴식 및 방진마스크 등 개 인 보호구 착용 • 견고하지 못한 환기구 덮개 등 청소 시 직접 올라가 청소는 금지하고 보조 청소용구 사용 • 사다리 이용시 2인 1조로 작업하고 사다리 위에서 무리한 동작 금지
4. 환경 미화	③분리수거	• 중량물 취급방법 미준수로 인한 근골 격계질환 발생 • 이동식집게 크레인을 이용한 반출작 업 중 중량물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 • 깨진 병조각 등 날카로운 물체 포장 중 찔릴 위험 • 분리수거장 바닥 장애물에 의한 분리 작업 중 미끄러짐 위험 • 대형 폐가전제품 이동작업 중 요통재 해 및 끼임 재해 위험 • 음식물 쓰레기 부패에 의한 병원체 감염위험 • 음식물 분리수거통 운반 중 전도 및 요통재해 위험 • 분리수거 작업 중 안전 도구(장갑, 집 게 등) 미사용에 의한 재해 위험 • 재활용품 수거차량 작업 반경 내 출 입금지 조치 미비로 재해 위험	•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 이동식집게 크레인 작업 반경 내 출 입금지 조치 • 쓰레기 포장작업 중 내용물 확인 철 저 및 장갑 착용 • 분리수거장 바닥 장애물 정리정돈 철 저 • 대형 폐가전제품은 집게크레인 및 수 거업체에 위탁하여 이동 및 반출 •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후 장기간 보 관을 금지하고 기한 내 반출조치 • 중량물 취급방법 준수 • 분리수거 작업 시 안전장갑, 집게 등 수공구 사용 • 재활용품 수거차량 작업 반경 내 출 입금지 조치

4.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작업안전 수칙

4.1 수위 및 경비원 직종관련 작업 시 12대 안전수칙

❶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 예방

- 1) 수면장애, 불규칙한 생활시간으로 인한 혼란, 각종 건강문제(만성피로, 소화불량, 우울, 성격변화,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Shift Maladaptation Syndrome)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대작업을 오래할수록 그 증세는 더욱 나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큰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르므로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으로 진단된 근로자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경비실은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현장 내 휴게실을 설치하여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잠자기 전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명상 등의 방법으로 예민해져 있는 마음을 가라앉힌다.

❷ 고령 근로자의 건강관리 확보

- 1) 고령근로자는 노화로 인해 근력, 순발력, 시력, 명암조절, 청력 및 평형기능, 기억력, 학습능력, 주의력의 약화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 2) 작업방법에서 가급적 중량물 취급을 피하고 능력에 맞게 작업속도를 조절한다. 작업환경에서 가능한 조명은 밝게 하고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 표지나 글씨는 크게 게시하고 정보의 전달을 듣는 방법에서 보는 방법으로 한다.
- 3)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심야작업이나 중량물 운반 작업의 배치를 가능한 배제한다. 평소 고혈압, 당뇨 등 기초질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❸ 뇌·심혈관질환 예방

- 1)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사회 심리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요인, 교대작업 및 야간근무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유전, 식습관, 흡연 등에 의한 비업무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의 뇌혈관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 2) 뇌·심혈관질환은 양적으로는 가장 많으며 질적으로 가장 심각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통해 발병가능성을 예측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초 질환을 잘 관리하는 등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장시간 노동 및 노동 강도에 대한 개선, 야간작업 및 교대작업에 대한 개선, 근로자의 생활습관 개선, 현장 응급환자 발생 시의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④ 근골격계질환 예방

- 1) 협소한 경비실에서 장시간 앉은 자세로 업무를 하거나 협소한 작업 장소, 중량물인 자재 또는 물건을 운반·취급하는 작업, 부적절한 작업 자세, 어두운 조명상태에서의 작업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 2) 근골격계질환은 초기단계에서 치료가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증상(근육통증, 요통 등)이 나타나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초기의 치료와 작업환경 및 설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고령근로자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으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여 부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⑤ 수목 전지제거 작업 시 사다리 사용에 유의한다.

- 1) 아파트나 건물 등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데, 이때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릴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철제 난간이나 외사다리에서 내려갈 때가 올라갈 때보다 5배 정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사다리를 내려갈 때 시야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작업도구나 운반물을 들고 내려갈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2) 수목 전지작업 시에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하고, 불가피하게 나무에 올라갈 때에는 안전한 구조의 사다리를 사용하여 올라간다. 가능하면 고지 가위를 사용하고, 절단 전 안전한 위치를 확보한 후 작업을 한다.

⑥ 유해물질 취급 및 보관 주의

- 1) 아파트 순찰 도중에 청소약품, 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치워야 할 경우에는 화학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2) 안전장화나 장갑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즉시 새로운 안전장화나 장갑으로 바꾸어서 착용한다.
- 3) 청소약품과 같은 화학물질을 음료수로 착각하고 마셔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정해진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⑦ 예초기 사용시 안전에 유의

- 1) 아파트 내에서 예초기를 사용한 제초작업 시에는 돌 혹은 모래가 튀어 올라 눈 혹은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따른다.
- 2) 예초작업 중에 예초기 칼날을 교체할 때 손을 베일 수 있으므로, 칼날 조임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 후에는 거리를 둔 상태에서 시동을 건다.
- 3) 예초기를 사용한 제초작업 시에는 보안경, 보안면, 안전화, 정강이 보호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⑧ 미끄러운 바닥 또는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예방

- 1)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순찰 중에 엔진오일 등의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고 지하주차장의 낮은 조도 때문에 장애물이나 돌출부에 부딪혀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지하주차장 바닥의 물기, 엔진오일 등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우수한 안전화를 착용한다.
- 2) 음식물 쓰레기통 등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들고 이동할 때 아스팔트 턱 또는 바닥 돌출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무거운 물건을 이동할 때는 경사로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가능하면 2인 1조로 작업한다.
- 3) 손수레를 이용하여 물건을 싣고 운반할 때에는 인력 운반에 적합한 중량과 부피 이하로 적재하고 과속방지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서행하여 운반하거나 우회하여 운반한다.
- 4) 재활용품 정리 작업 시에는 비닐봉지 등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들을 먼저 분리수거 후 작업한다.

⑨ 출입문,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집게 등에 의한 끼임 사고 예방

- 1)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을 보조하는 중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집게에 팔이 끼어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분리수거 작업 시에는 집게차 작업 반경 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가능하면 집게차 주변에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한다.
- 2) 경비실 문 혹은 택배 물건 전달 시 현관문이 닫혀 손가락이 문에 끼이는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문에 완충장치 혹은 도어 스톱퍼 등의 장치로 끼임 예방조치를 한다.

⑩ 물건이 떨어져 다치는 낙하 사고 예방

- 1) 수목 전지 제거 작업 중에 절단된 나뭇가지 혹은 사용 중인 전지 가위 등이 아래로 떨어져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전지작업 시에는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하여 나뭇가지나 전지가위 등이 얼굴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2) 자동 현관문 점검 중에 상판 덮개 등이 떨어져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하고 2인 1조로 작업한다. 출입구 통로 등 공동사용구역의 천정에 설치된 전등을 교체할 때 전구가 깨져서 그 파편에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교체작업 시 보안면, 보안경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전구는 수건 등으로 감싸서 교체한다.

⑪ 베임 및 찔림 사고 예방

- 1) 재활용품 분리작업 중에 통조림 깡통 혹은 깨진 유리조각 등에 의해 손을 베일 수 있으므로 분리작업 시에는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집게 등 공구를 사용한다.
- 2) 수목 전지작업 중에 전지가위에 손가락을 베이는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지작업 시에는 고지가위를 사용하고 베임방지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 3) 입주자가 버린 폐기물 가구 등에 붙어있는 거울 혹은 유리를 깨다 유리파편에 얼굴 등을 다칠 수 있으므로 보안면,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고, 유리파손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

㉓ 교통 사고 예방

- 1) 아파트 및 건물 입구에서 청소작업 및 교통정리를 하는 도중 과속 주행 중인 차량에 치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및 건물 출입구에 서행표지, 반사거울,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다.
- 2) 단지 내에서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과속 방지턱을 지나다 혹은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승차용 안전모(헬멧),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4.2 수위 및 경비원 직종관련 작업시 안전점검표

1) 표준 안전작업수칙

번호	안전 수칙 내용
①	전지작업 시에는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하고 절단된 나뭇가지 혹은 전지가위가 얼굴 등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②	예초기를 사용한 제초작업 시에는 보안경, 보안면, 안전화, 정강이 보호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미끄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지하 주차장 바닥에 있는 물기, 엔진오일 등의 미끄럼 사고원인은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고, 필요 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우수한 안전화를 착용한다.
④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들어 이동할 때는 경사로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가능하면 2인 1조로 작업한다.
⑤	자동현관문 점검 작업 중에는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보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 가능하면 보안면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⑥	천정의 전구 교체작업 시에는 보안면, 보안경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전구는 수건 등으로 감싸서 끼우거나 뺀다.
⑦	재활용품 정리 작업 시에는 비닐봉지 등 미끄럼을 유발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먼저 분리수거 후 작업한다.
⑧	손수레를 이용하여 물건을 싣고 운반할 때에는 인력 운반에 적합한 중량과 부피 이하로 적재하여야 하고 과속방지턱이 있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서행하여 운반하거나 과속방지턱을 우회하여 운반한다.
⑨	맨홀 점검은 2인 1조로 하고,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⑩	각종 안내 표지판 운반 작업은 2인 1조로 하고, 안전한 구조의 손수레를 사용한다.

⑪	재활용품 분리작업 시에는 보호 장갑 등 베임 방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집게 등 공구를 사용한다.
⑫	전지가위를 사용하는 수목 전지작업 시에는 고지가위를 사용하고, 베임 방지 보호 장갑을 착용한다.
⑬	유리 혹은 거울 등의 생활폐기물의 수거나 운반 작업 시에는 보안면,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리파손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
⑭	수목 전지작업 시에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하고, 불가피하게 나무에 올라갈 때에는 안전한 구조의 사다리를 사용하여 올라간다. 가능하면 고지 가위를 사용하고, 절단 전 안전한 위치를 확보한 후 작업을 한다.
⑮	공동주택 단지의 지붕 등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먼저 지붕면의 물기를 제거한 후 올라가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우수한 신발과 안전대를 착용한다.
⑯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는 가능한 한 도보로 이동하고 불가피하게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 시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 보호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⑰	순찰 중 치위야 할 화학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는 먼저 화학물질의 종류, 특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학물질은 정해진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⑱	모든 중량물의 운반은 가능하면 2인 1조로 하고, 적절한 운반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수위 및 경비원 직종관련 작업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점검 결과		
		양호	보통	불량
①	순찰 시 이동통로에 넘어짐 사고 원인이 되는 장애물의 위치를 알고 있는가? 즉, 순찰구역의 유해, 위험요인 및 순찰 통로는 잘 알고 있는가?			
②	주차장 바닥에 오일, 물기 등과 같은 미끄럼 사고원인은 즉시 제거하는가? 순찰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않는가?			
③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출입구에 물기 제거 매트 등을 설치하는가?			
④	전지 작업을 위한 사다리 작업 시 안전한 작업 방법(2인 1조 작업, 안전한 구조의 사다리 사용 등)을 숙지하고 있는가?			
⑤	전지 작업 시 고지 가위 같은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가?			
⑥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과속금지, 반사경 설치)를 하고 있는가?			
⑦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타고 순찰 시 승차용 안전모(헬멧)를 착용하는가?			
⑧	재활용 수거 작업 시 안전한 작업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⑨	재활용 수거 작업 시 손 보호 장갑, 안전화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가?			
⑩	경비실내 환기는 충분히 이루어지는가? 교대 근무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가?			
⑪	야간 순찰 시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 등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는가?			
⑫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가? 흡연하면서 작업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지는 않는가?			
⑬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자신의 병력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건강관리를 하는가?			

5.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주요 안전표지

○ 금지표지

			
출입 금지	금연	화기 금지	사용 금지

○ 경고표지

			
위험장소 경고	떨어짐	미끄러짐	중량물 취급
			
고압전기 경고	전기 감전	베임 경고	화학물질 경고

○ 지시 표지 및 안내표지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비상구

IV. OPL(One Point Lesson)

1. 순찰보안 작업관련 유형별 OPL

공정명	순찰보안	작업명	순찰작업
주요 유해.위험 요인	① 아파트, 빌딩 내 바닥에 있는 물기, 엔진 오일 등에 의한 미끄러짐 위험 ② 수면장애, 불규칙한 생활 등 교대작업 부적응에 의한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 ③ 과도한 업무량 및 스트레스, 야간근무, 개인적 습관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		
위험성평가	- 주요 재해유형 - ① 미끄러짐(전도) ② 부딪힘(충돌) ③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 ④ 뇌심혈관질환		
재해사례	새벽 근무지 초소로 가기 위해 경비 용품을 챙겨 들고 건물 외부 계단을 올라가다 구겨 신은 신발에서 발이 미 끄러져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뇌출 혈로 사망		
주요 예방대책	① 근무 또는 작업 내용에 적합하고 올바른 복장 착용 ② 바닥 물기, 엔진오일 등 미끄럼 사고의 원인은 발견 즉시 제거 ③ 높은 조도 유지 및 미끄럼 방지 기능 안전화 착용 ④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속적 산업보건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및 상담		
관련법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②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7조(계단의 강도), 제28조(계단참의 높이) ③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9조(천장의 높이), 제30조(계단의 난간) ④ KOSHA G-10-2008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빈도 \ 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2. 고객응대 작업관련 유형별 OPL

공정명	고객응대	작업명	택배/우편물관리																
주요 유해.위험 요인	① 현관문이 갑자기 닫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완충장치 부재로 끼임 ② 무거운 중량물을 갑자기 들러다 허리를 다친 요통성 재해 ③ 아파트 현관문 주변 계단의 물기, 얼음 등 미끄러움 유발 요인																		
위험성평가	- 주요 재해유형 - ① 끼임(협착) ② 요통, 근골격계질환 ③ 미끄러짐(전도)																		
			<table border="1"> <tr> <th>빈도 \ 강도</th><th>대</th><th>중</th><th>소</th></tr> <tr> <th>고</th><td>중대</td><td>중대</td><td>미미</td></tr> <tr> <th>중</th><td>중대</td><td>경미</td><td>미미</td></tr> <tr> <th>저</th><td>미미</td><td>미미</td><td>미미</td></tr> </table>	빈도 \ 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빈도 \ 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재해사례	출입문을 열고 택배 물건을 전달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출입문이 바람에 닫히면서 오른손을 가격하여 손가락이 골절되고 표피가 떨어짐																		
																			
주요 예방대책	① 현관문 완충장치 혹은 도어 스토퍼 등의 장치로 끼임 예방조치 ② 중량물 이동 시에는 경사로를 이용하고 가능하면 2인 1조로 작업 ③ 중량물의 운반 시 대차 등 운반도구 활용 ④ 아파트 현관문 주변 계단 등의 미끄러움 유발 요인 제거																		
관련법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미끄러짐의 방지)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작업장의 출입구)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고령근로자를 위한 휴식시간과 휴게시설)																		

3. 시설관리 작업관련 유형별 OPL

공정명	시설관리	작업명	기기관리																
주요 유해.위험 요인	① 아파트 및 빌딩 내 승강기 임의 개방에 의한 떨어짐 및 끼임 ② 안전수칙 미준수로 주차 기계의 체인에 상의가 끼임 ③ 보호구 미착용으로 천정의 전등 교체 시 파편으로 얼굴 부상																		
위험성평가	- 주요 재해유형 - ① 떨어짐(추락) ② 끼임(협착) ③ 맞음(비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빈도 \ 강도</th><th>대</th><th>중</th><th>소</th></tr> <tr> <th>고</th><td>중대</td><td>중대</td><td>미미</td></tr> <tr> <th>중</th><td>중대</td><td>경미</td><td>미미</td></tr> <tr> <th>저</th><td>미미</td><td>미미</td><td>미미</td></tr> </table>			빈도 \ 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빈도 \ 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재해사례	아파트 및 빌딩 내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해 이상 유무를 살피기 위해 강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다 아래로 떨어짐 																		
주요 예방대책	① 승강기 관리자 외 출입금지 조치 ② 승강기 및 주차 설비 유지 보수전문가에 의한 점검, 정비, 수리 ③ 승강기 및 주차설비 오작동 시 전원 차단 후 이상유무 확인 ④ 전등 교체 시 보안면, 보안경, 보호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법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양중기)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4. 환경미화 작업관련 유형별 OPL

공정명	환경미화	작업명	미화작업
주요 유해.위험 요인	① 아파트 및 건물의 지붕면의 물기, 이끼 등에 의한 미끄러짐 ② 아파트 내 수목 전지 제거 시 사다리 작업의 안전 수칙 미준수 ③ 날카로운 예초기 사용 시 부주의 및 보호용구 미착용		
위험성평가	- 주요 재해유형 - ① 떨어짐(추락) ② 맞음(비래) ③ 베임		
재해사례	아파트 단지 및 고층 빌딩 지붕에서 미화작업 중에 지붕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		
주요 예방대책	① 안전한 구조의 사다리를 사용하고 가능한 2인 1조로 작업 ② 높은 지붕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미끄럼 요인 사전 제거 ③ 미끄럼 방지 기능이 우수한 안전화 착용 및 안전대 착용 ④ 예초기 사용 시 보안경, 보안면, 정강이 보호구 등 착용		
관련법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② KOSHA C-35-2008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③ KOSHA G-18-2009 이동식 금속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가이드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빈도\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5. 분리수거 작업관련 유형별 OPL

공정명	환경미화	작업명	분리수거
주요 유해.위험 요인	①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시 수거 차량 작업 위험 반경 내 접근 ② 재활용품 정리작업 중 박스 밑에 깔린 비닐봉지 등 미끄럼 유발 ③ 날카로운 예초기 사용 시 부주의 및 보호용구 미착용		
위험성평가	- 주요 재해유형 - ① 끼임(협착) ② 미끄러짐(전도) ③ 베임		
재해사례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을 보조하는 중 재활용품 수거 차량의 집게에 팔이 끼어 크게 부상을 당함		
주요 예방대책	①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시 집게차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② 재활용품 정리 작업 시 비닐봉지 등 미끄럼 유발 물건을 먼저 수거 ③ 쓰레기 포장 시 깨진 유리병 등 내용물 확인 철저 ④ 분리 작업 시 보호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집게 등 공구 사용		
관련법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③ KOSHA M-5, 2012(작업장 내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지침)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빈도 \ 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V.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제언

1.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관련 국내 법규

1.1 수위 및 경비직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1) 법규

- 법규 : 노동부, 산업안전법, 시행령,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주로 법상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등을 준용해야 하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전도의 방지, 통로의 조명, 통로의 설치, 보호구의 지급, 사다리 식 통로등의 구조, 휴게시설의 설치 및 휴식시간 부여, 전기·기계기구 등의 접지, 작업자세, 직무 스트레스 예방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

●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전문개정 2009.2.6]

●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6.4][전문개정 2009.2.6]

※ 관련사항

시행규칙 제6조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시행규칙 제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시행규칙 제8조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시행규칙 제10조 [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 제23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제24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흙,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갭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반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멍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 · 방한복 · 방한화 · 방한장갑

● 제42조(추락의 방지)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 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 · 설비 ·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9조(휴게시설)

-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갯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3.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본조신설 2012.3.5]

●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가.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m, 수평거리 1.5m 이내인 것

나.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

라.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체

가.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케도

나.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다. 고압(750V 초과 7000V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V 초과 7000V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V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V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판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이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① 사업주는 이동 중이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사다리를 노출 충전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근로자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전기회로를 개방, 변환 또는 투입하는 경우에는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차단기 등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하여 자동 차단된 후에는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지시를 하면 근로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66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고시 및 기준

■ 고령근로자의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1) 개요

● 제·개정경과 : 2012년 11월 산업안전 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Understanding the safety and health needs of your workplace
: Older workers and safety, WORK SAFE, 2010
- 중고령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8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주의 교육 훈련 및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및 제659조(작업환경의 개선)
- 근로기준법 제 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제 54조(휴게)

(2) 주요 내용

● 목적 : 이 지침은 고령근로자(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에 따라 작업 중 발생하기 쉬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상의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령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 근력 및 근지구력 저하, 유연성 및 순발력 감소, 심폐지구력 감소, 신체 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신체적 특성
- 전반적 시각기능의 감퇴, 청각기능의 저하 등 감각적 특성
- 노화, 기억력, 비교 변별능력, 계산능력 등의 인지적 특성

● 고령근로자의 취약 작업: 고령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위험성이 높아지는 다음의 작업

- 고소작업, 전도 위험이 높은 작업, 중량물 운반 작업
- 급격한 동작 및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를 필요로 하는 작업,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
- 낮은 조도 및 소음 작업장에서의 작업, 작업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작업

● 사업주의 의무에 포함된 내용

- 고령근로자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과제를 부여
- 고령근로자의 취약 작업은 가급적 지양
- 고령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
- 휴식시간 주기를 단축 운영하거나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운영
- 개인보호구 지급, 작업환경의 개선, 작업시간과 작업내용의 조정 등 안전보건 조치
- 고령근로자의 작업수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
- 고령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표준 안전작업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그밖에 고령근로자의 작업 수행에 대한 상담과 안전보건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 고령근로자의 취약작업에 대한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고소작업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 작업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 중량물 운반 작업, 급격한 동작 및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를 필요로 하는 작업, 낮은 조도

및 소음 작업장에서의 작업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 작업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작업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

● 고령근로자 작업수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하기 :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과 작업과정 확인
- 위험 평가하기 : 앞 단계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각 개인의 위험을 평가
- 예방대책 제시하기 : 위험 감소 및 제거를 위해 예방 대책 제시
- 모니터링 및 재검토하기 : 위험 발생 예방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

■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1) 개요

● 제·개정경과 : 2012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Cedefop, Innovative learning measures for older workers, 2008
- Cedefop, Promoting lifelong learning for older workers, 2006
- ※ Cedefop: 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 ENWHP, Health Employees in an Aging Europe, 2006
- 중고령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8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노동부 고시 제2010-75호(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2) 주요 내용

● 목적 : 이 지침은 고령근로자(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 관련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령근로자의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작업상 특성, 감각능력 저하에 따른 작업상 특성, 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작업상 특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반영할 내용: 고령근로자의 취약작업(아래 항목들) 및 작업상의 위험 상황,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 등

- 고소작업, 미끄럽거나 경사 및 고르지 못한 작업장 작업, 중량물 운반 작업
- 급격한 힘 및 자세 변화가 요구되는 작업, 신속한 동작이 요구되는 작업
-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이 자주 변하는 작업
- 낮은 조도 및 소음 작업장에서의 작업, 작업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작업 등

● 고령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고려사항 및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방법

● 사업주의 의무에 포함된 내용

- 고령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설비와 장비 및 기타 편의를 제공
- 고령근로자에게 해당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 교육 참가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고령근로자에게 적합한 교육훈련 교재나 보조재를 제공
- 고령근로자가 과거에 익힌 작업 방법이나 습관에 의한 무의식적인 작업관행에 의거하여 새로운 작업 도중에 인적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 고령근로자를 신규작업에 배치하거나 또는 작업 변경 시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후에도 새로운 방법을 익힐 때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사후관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고령근로자의 신체능력 증진 운동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계획 : 스트레칭, 걷기운동, 생활습관개선
- 프로그램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고령근로자의 인지능력 증진 운동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신체활동, 현실인식훈련, 기억력훈련, 목적있는 활동
- 프로그램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계획 : 직무스트레스, 이완요법 위한 공간마련
- 프로그램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 시 안전 기술지침

(1) 개요

- 제·개정경과 : 2011년 6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관련규격 및 자료
 - － 건물관리업 사고사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

(2) 주요 내용

- 목적 : 공동주택단지에서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 작업 시에는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끼임, 낙하, 넘어짐 등 여러 유형의 재해 위험요소와 그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경비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 끼임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 낙하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 날아옴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 넘어짐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 베임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 찢림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 떨어짐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 교통사고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 화학물질 노출 및 중독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 기타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등
- 사업주(관리소장 등)의 책무에 포함된 내용
 - － 경비원으로 하여금 건물 내 모든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하여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한다.
 - －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의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한다.
 - － 각종 경보설비를 점검하여 작동할 수 있게 한다.
 - － 건물 주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한다.
 - － 비상상태나 화재 및 수해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방법, 방수, 방화 등의 설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각종 위험이 있을 때 경찰서 및 소방서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필요 시 경고 방송을 실시한다.
- 공동주택단지 내 파손된 곳이나 고장 난 곳이 발견되면 즉시 점검하여 수리한다.
- 올바르게 제대로 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근로자에게 적당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 경비의 책무에 포함된 내용

- 근무지의 제반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경비에 임한다.
- 비상 시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도난, 화재 및 안전사고 대처방안을 명심한다.
- 위험요소 및 부상자의 발생, 필요한 장비나 지원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한다.
- 장비를 적절히 관리하고 보수한다.
- 경비업무 교대 시에는 경비 업무 중에 발생한 시설물 고장, 신고 접수 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 건물 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 개요

● 제·개정경과 : 2011년 6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관련규격 및 자료

- 건물관리업 사고사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

(2) 주요 내용

● 목적 : 건물 내·외의 시설물 관리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끼임, 감김, 넘어짐, 베임, 떨어 짐 등 재해의 위험요소와 예방대책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끼임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감김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감전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날아옴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교통사고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넘어짐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베임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떨어짐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부딪힘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폭발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화상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화학물질 노출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기타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등

● 사업주의 책무에 포함된 내용

- 점검표, 안전점검 중 등의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 점검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통로의 확보 및 유지, 점검 관리를 한다.
- 안전통로 주변 기계·기구의 위험부분에 덮개 등의 안전조치를 한다.
- 검정 합격 보호구의 선정, 지급 및 보호구 착용여부의 관리를 한다.
- 방호기구, 접지사향의 자체 점검 및 결함 발견 시 교체 또는 개선한다.
- 표지판 부착 대상 기계, 설비 및 작업을 선정한다.
- 기계, 설비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시 운전정지 조치를 한다.
-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시를 용기 등에 부착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대 설치, 유지 관리 및 떨어짐 방지망을 설치한다.
-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격리 보관한다.
- 화기작업 시 안전작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화기작업 시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 맨홀, 탱크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18% 미만으로 산소농도가 측정된 장소에서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도록 조치한다.
- 야간 교대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적당한 휴식시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 건물의 석면지도를 작성한 후 석면 지도와 석면포함 공간에 대해 건물 관리작업 근로자에게 고지한다.
- 근로자에게 석면노출 관련 교육, 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지하주차장 등 취약한 장소는 항시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책무에 포함된 내용

- 점검 및 정리정돈 시 안전 및 보건 사항을 준수한다.
- 사업장 내 통행 시 안전통로 이용 및 안전통로 내 위험상황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보호구의 성능 유지, 관리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 환산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접지여부를 확인한다.
- 기계, 설비 등의 재가동 전 다른 근로자의 작업여부를 확인한다.
- 경고표지 내용 숙지 및 유해, 위험 화학물질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이행한다.
- 작업 전 방호장치 시험작동 및 이상여부 확인, 방호장치 상태, 성능 확인 후 후임 작업자에게 인계한다.
- 결함 발견 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 안전망과 덮개 등의 임의 해체를 금지한다.
- 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를 요구한다.
-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화기작업 시 작업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실시한다.
- 안전수칙 및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 및 준수한다.
- 작업 전 산소농도 확인(18% 이상 유지 여부) 및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에 관한 지침

(1) 개요

- 제 · 개정경과 : 2011년 10월 산업의학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ork improvement in small enterprise(WISE) Action Manual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Programme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lain Language about Shiftwork. DHHS(NIOSH) No. 97-145. 1997
 -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노동안전위생법. 2011
 - Caruso CC. Overtime and extended work shifts recent findings on illnesses, injuries, and health behaviors.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04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2) 주요 내용

●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의거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관리활동에 적용한다.

● 장시간 근로의 건강 영향

- 심혈관계, 뇌혈관계, 근골격계
- 생식 건강, 정신 건강, 내분비계, 면역계, 사고 증가, 건강관련 행위, 기타

● 사업주의 조치사항에 포함된 내용

- 하루에 1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정기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일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1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보건관리자에 의한 면접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면접지도를 할 때에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다.
- 사업주는 면접지도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업 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야간 근무의 감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 사업주는 작업장에 적절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 사업주는 야간 근무 시에 작업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력 부족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 보건관리자의 조치사항에 포함된 내용

-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근무상황, 피로의 축적 정도, 그 밖의 정신 건강을 포함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고 근로자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 수면 위생에 대해 교육하고, 필요할 경우 의사에 의한 진료를 받도록 한다.
- 근로자의 1개월간의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고, 다음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산업의학전문의를에게 의뢰한다.
- 상담지도에 관여하는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나 사업주로부터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

켜야 한다.

● 개인 조치사항에 포함된 내용

-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저하된 신체 능력의 회복을 위해 근로자는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해야 한다.
- 피로감이 심하게 느껴질 경우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 ① 15분 이내의 낮잠은 오히려 더 졸리게 만들게 되므로 낮잠은 가능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취하는 것이 좋다.
 - ②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카페인과 술을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도록 한다.
- 정기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고, 피로로부터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직무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근로자용 지침

(1) 개요

● 제 · 개정경과 : 2011년 11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KOSHA CODE H-42-2006,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지침
- KOSHA GUIDE G-5-2009, 사고조사에 관한 안전가이드
- 보건관리자용 직무스트레스 관리 매뉴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3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5호(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2) 주요 내용

●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권고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인식과 대처

-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증 인식의 중요성 : 같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해도 직무스트레스 반응의 크기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다. 특히, 스트레스에 따르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때는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 직무스트레스 인식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 별것도 아닌 일에 동료한테 화를 낸다. 짜증나고 성가신 경우가 많다. 업무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 괜히 초조하고 안전부절하지 못한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소화가 잘 안된다. 전보다 잠이 잘 안온다. 흡연이나 음주가 전보다 늘었다.
- 우울증 인식 : 다음과 같은 경우 우울증을 의심한다.
- 다음은 우울증, 우울상태가 의심될 때의 체크 항목이다. 체크포인트는 항목 1 또는 2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고 합계 5개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해당하는 항목이 많으면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도록 권한다.
 1. 최근 2주간 항상 우울한 느낌이 들거나 기분이 가라앉는다.
 2. 최근 2주간 여러 가지 일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기고 싶지 않다.
 3. 식욕이 감소 또는 증가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감소 또는 증가했다.
 4. 매일 밤잠을 잘 못 들고 밤중 또는 아침 일찍 눈이 뜨이거나 반대로 늦게까지 잔다.
 5. 말이나 동작이 느려지고 불안 초조하여 진정이 안 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6. 항상 피로를 느끼거나 기력이 없다고 느낀다.
 7. 항상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또는 죄의식을 느낀다.
 8. 항상 집중이 안 되거나 빨리 판단할 수 없다.
 9. 자신에게 상처를 내거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 직무스트레스 대처방안에 포함된 내용

- 직무스트레스의 관리를 위하여서는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사업장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지만,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문제의 발생을 완화시키거나 늦추기 위한 자기관리 방법도 중요하다. 여기서는 직무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의심될 때의 대처 및 증상완화를 위한 자기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 증상완화를 위한 자기관리 방법 :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적절하게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개발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장이완기법, 호흡법, 심상훈련, 자신의 생각변화(인지수정) 등을 포함한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평상시의 자기관리에 포함된 내용

- 건강한 신체 만들기 : 균형있는 식사, 적절한 운동
-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응 : 성격으로부터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대인관계로부터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등
- 행동의 통제 : 자기 행동의 인식,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지연, 행동의 습관화 등

1.4 안전보건관련 법령의 적용 현황

1) 경비업법

- ① 법 령 : 경찰청 법률(법률 제11872호, 2013.6.7, 일부개정)
- ② 관련부처 : 경찰청 (생활안전과)
- ③ 연 락 처 : 02-3150-1331
- ④ 주요법령내용

- 제3조(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 제4조(경비업의 허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하생략－

－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

- ①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 경비업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2) 공중위생관리법

① 법 령 : 보건복지부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②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구강생활 건강과)

③ 연 락 처 : 02-2023-7513

④ 주요법령내용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이하생략－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营业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⑥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제17조(위생교육)

-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3.28>

3) 주택법

- ① 법 령 : 국토교통부 법률 제11871호, 2013.6.4, 일부개정)
- ②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③ 연 락 처 : 044-201-3320
- ④ 주요법령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8.6>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 제43조(관리주체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

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법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방법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 제50조(안전점검)

-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06.2.24>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7제2항관련)

구 분	대 상 시 설	점 검 횟 수
1. 해빙기진단	석축·옹벽·법면·교량·우물·비상저수시설	연 1회(2월 또는 3월)
2. 우 기 진 단	석축·옹벽·법면·담장·하수도	연 1회(6월)
3. 월동기진단	연탄가스배출기·중앙집중식·난방시설·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	연 1회(9월 또는 10월)
4. 안 전 진 단	변전실·고압가스시설·도시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소방시설·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한다)·유류저장시설·펌프실·승강기·인양기·전기실·기계실·어린이 놀이터	매분기 1회 이상(다만, 승강기의 경우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위 생 진 단	저수시설·우물·어린이 놀이터	연 2회이상

비 고 : 안전관리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법 령 : 국토교통부 법률 제11928호, 2013.7.16, 일부개정)

②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③ 연 락 처 : 044-201-3587

④ 주요법령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이하생략-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1.16>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2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m^2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m^2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2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m^2 이상의 전시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m^2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제15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 ①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 시행령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 · 시공 ·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 · 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9.18]

2.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관련 외국 제도

2.1 미국

(1) Janitor 안전 훈련 가이드

- 자료 : “The Janitorial Safety Training Program” , Work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WOSHTEP)
- 정의: Janitor는 수위 그리고 건물 등의 관리인, 잡역부, 청소부 등을 말한다.
- 내용 : 근로자에게 필요한 건강 및 안전 훈련 세션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총 8개의 훈련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 자료는 안전 방향, 화학적 위험, 전기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작업 중 부상, 응급상황 계획, 강도와 폭행, 미끄러짐과 낙하 등 Janitor 산업에서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Janitorial Safety Training Program은 관리자나 고용주를 위한 것과 근로자를 위한 것 두 가지 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나 고용주를 위해 설계된 훈련 가이드는 훈련 세션을 수행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 지침과 그들을 위한 배경 정보 및 자료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 설계된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loose-leaf handouts)를 포함한다.

(2) Job Specification - Janitor

- 자료 : “Job Specification – Janitor” , Michigan Civil Service Commission
- 내용: Janitor 직업에 대한 설명, Janitor 직업에 대해 Janitor-E와 Janitor-A 등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Janitor의 주 의무 및 보조 의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지식, 기술 및 능력 등에 대한 측면에서 이 직업에 대한 요건들을 설명한다.

2.2 유럽연합(EU)

(1) 고령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자료

- 자료 : CEDEFOP(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Innovative learning measures for older workers, 2008”
- 내용 : 미래의 노동력 부족과 함께 고령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고령근로자를 위한 혁신적인 업무 실행과 학습 방법이 요구된다. 이것은 2004년에 시작된 CEPDFOP 고령근로자와 평생학습(OWLL) 네트워크의 두 번째 제품으로, 고령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추진에 대해 국제적 개요와 유럽과 이후의 사회 정치적 전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작업, 학습, 노화 등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으면서 내용의 방향은 실용적인 것에 맞춰있다. 고령근로자를 위한 지역 및 국가의 학습 전략과 조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자료 : CEDEFOP(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Promoting lifelong learning for older workers, 2006”
- 내용 :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노동자, 특히 고령 근로자 및 노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의 목적은 두 개의 주제 - 고령 근로자와 평생 학습 - 에 대한 논의 개요를 제공하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초점은 유럽 접근방식과 경험에 있으며, 다른 대륙,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
- 새로운 지식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는 노화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하며, 고령 근로자에 대한 평생 학습이 현실적 대안이다. 사회와 직장은 노화와 학습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고령 근로자를 지원하는 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학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2.3 호주

(1) 고령근로자의 작업 안전 관련 자료

- 자료 : WORK SAFE(Commission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Understanding the safety and health needs of your workplace : Older workers and safety
- 내용 : 고령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일하면서 얻은 자신의 기술과 경험은 노동과 기술 부족의 영향을 줄이고, **가치 있는** 멘토링 및 훈련 역할을 하는 등 직장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식 및 경험 때문에 그들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 노화와 관련된 특정 위험은 안전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작업장의

위험을 줄이고 작업을 개선하며 특히 물리적으로 까다로운 작업환경과 관련된 작업설계에서 다루어야 할 요인이다.

● 노화에 따른 근력 및 지각 능력의 감소 등 수행도 용량의 변화, 위해 규명, 위험 평가, 위험 제어, 관찰 및 제고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위험 관리 과정, 위해 요소 및 위험, 나이와 관련된 위해 요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4 캐나다

(1) 근골격계질환 감소 프로그램

● 자료 : Industrial Musculoskeletal Injury Reduction(IMIRP) Program, “Common Industry Jobs(CIJs) – Janitor Tool Kit” , In cooperation with the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British Columbia

● 정의 : Janitor는 문지기, 수위 그리고 건물 등의 관리인, 잡역부 등을 말한다.

● 내용 : Janitor 직업의 물리적 요구들, 정신적 요구들, 주요 및 보조 임무 등을 소개한다. 물리적 요구 분석으로 PDA 일반 지침, 작업 조직, 작업장 특성, 장비 제어, 수작업, 환경 조건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위험 요소 식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신체 부위로 목,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발목 및 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위험 식별 표시, 위험 신체 부위의 요약, 신체의 위험 요인, 부상 예방을 위한 제안 솔루션을 포함한 작업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체 부위별 MSI 안전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3.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관련 제도 제언

(1) 해당 직종 작업에 대한 사업주 의무 강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12년에 고령근로자의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기술지침, 건물관리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사업주나 관리자에게는 이러한 기술지침이 강제적인 의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해당 직종관련 안전에 대한 기술지침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및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자체 설비개선 등이 어려우므로 지자체와 연계한 개선노력 필요

- 현재 공동주택, 대형빌딩이나 회사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위 및 경비는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이 대부분이다. 자체적으로 고용한 인력이 아니므로 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정한 설비, 시설에 대한 요구나 개선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며, 산업안전 분야 감독 측면에서도 건물 시설 및 설비의 개선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 그러나 건물 등의 설비나 시설의 안전미비는 파견근로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주택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서도 규모에 정도는 있지만 점검 및 설비의 안전화를 강제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 따라서, 우선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대형, 고층단지, 대형건축물(1, 2종 시설물)부터 행정권한을 갖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안전설비, 통로, 난간, 맨홀덮개 등 설비 위주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3) 수위나 경비직종의 휴게시설, 세척시설에 대한 홍보와 개선활동이 시급함

-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형빌딩 특히 수위나 경비의 업무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무에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 업무를 행하고 있다

● 2012년 3월에 신설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 2에서는 세척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해당 규정의 신설여부와 수위 및 경비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장의 실태를 감안하여 세척 시설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의자의 비치, 수면장소의 설치 등 스트레스 종사 근로자의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휴게 및 위생설비의 구비는 격무와 스트레스 종사 근로자에게 다발 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감소와 일반재해 감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4) 수위 및 경비원 직종관련자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에서는 Janitor나 고령근로자 및 관리자 등 해당 직종 관련자가 필요한 안전 보건 교육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경비용역업체 근로자, 사장이나 관리자를 포함하여 일부는 간헐적으로 재해 및 안전 교육을 받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관련 재해자의 65.7%는 순찰보안 작업 중에 발생하며, 환경미화, 시설관리 작업 순으로 발생한다. 재해의 발생형태는 넘어짐 재해(45.3%), 떨어짐 재해(12.1%), 작업관련성질환(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순이며, 재해자의 51.9%가 근무를 시작한지 1년 미만의 근무자이어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5) 방문 순회형 상담심리사나 안전보건지도팀의 지원이 필요함

● 60세 이상의 고령 근무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극적이며, 주야 교대제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하여 교대근무증후군이 나타나기 쉬운 직종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고령 작업자의 건강유지는 고령화시대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노동력 확보라는 의미가 있다.

● 폐쇄적이고 한정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주야교대 근무로 시간 내기가 어려운 수위 및 경비 직종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공단 등이 지자체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문 순회형 상담심리사나 안전보건지원 담당 직원이 방문 순회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 지자체나 시 차원에서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 등의 지원을 요구 함

● 아파트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관련자는 60세 이상의 남성 고령자(퇴직자)가 많고, 개개인이

인맥이나 정보지 등을 통해 취직하고 있으며, 권익을 대변하여 줄 수 있는 수위 및 경비원을 위한 협회나 단체 등도 없는 실정이다.

● 수위 및 경비원들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자체, 시 차원에서 수위 및 경비원들의 단체, 협회 등을 설립하여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자체나 시 차원에서 단체나 협회 설립을 지원해주기 바라고 있다.

(7) '고용 창출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근무개선 홍보

● 60세 이상의 고령 근무자들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 만성 피로와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교대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교대 근무조를 2교대에서 3교대 등으로 늘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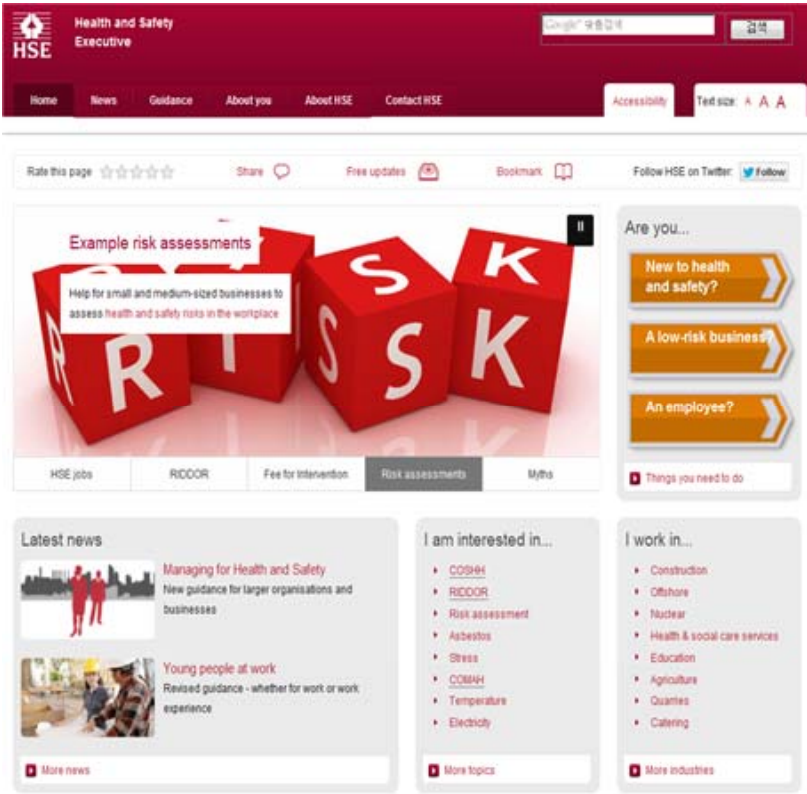
VI. 직종 관련 단체/기관 및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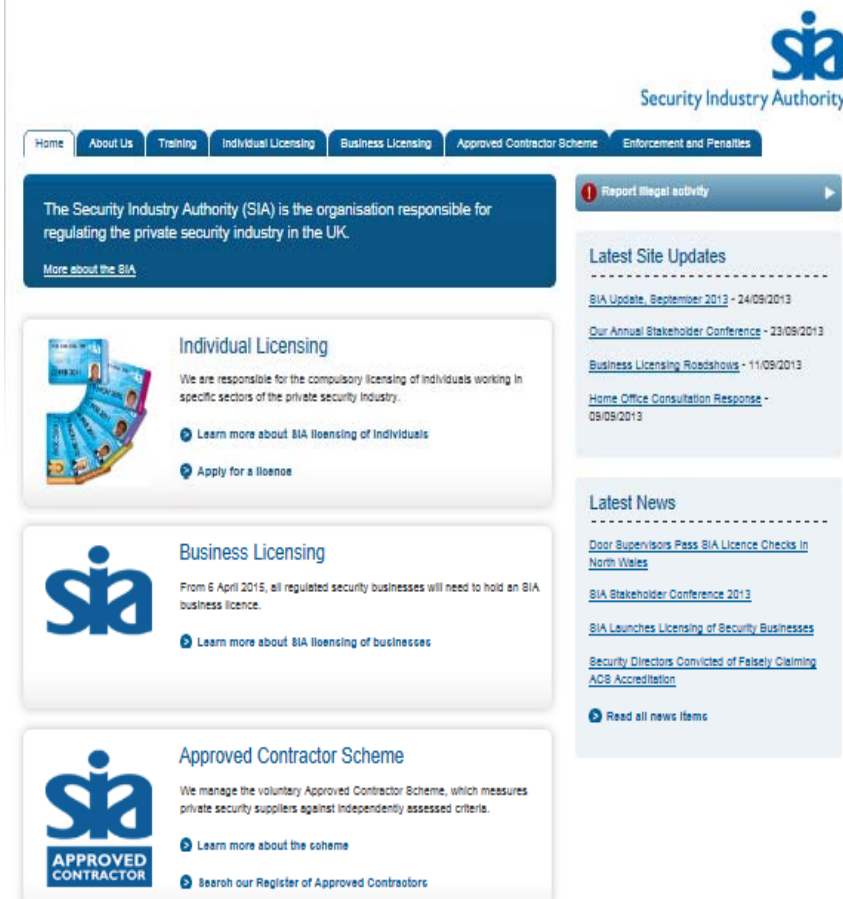
1. 해외 유관기관 및 단체/업체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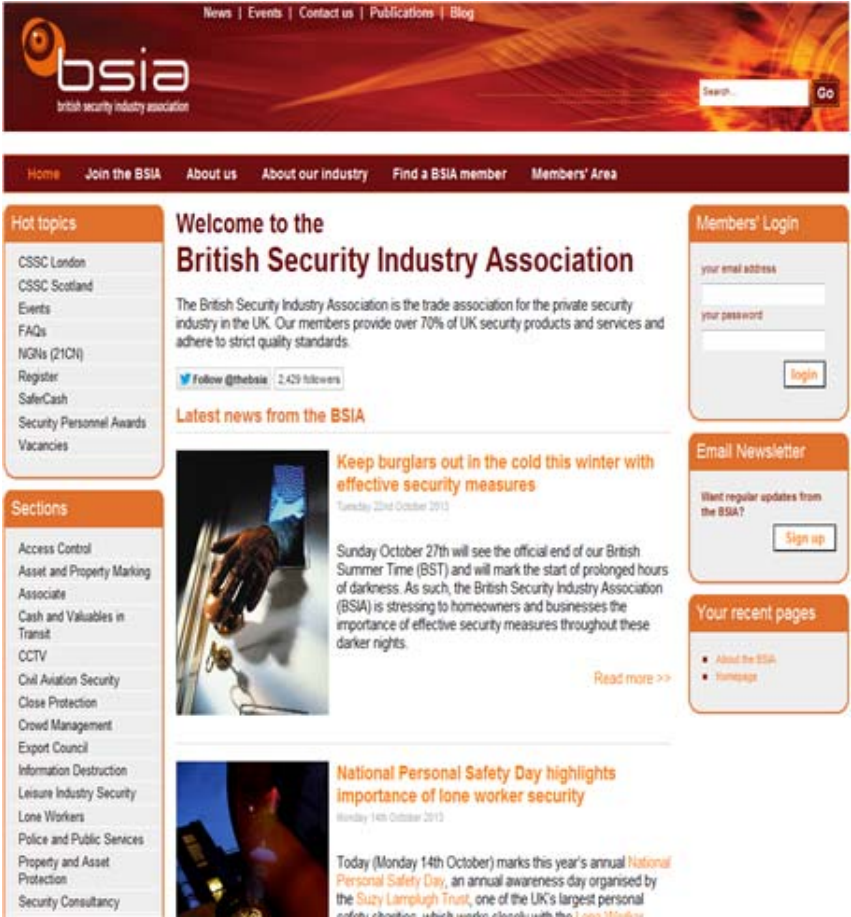
기관/단체	미국-중앙경보장치협회 Central Station Alarm Association(CSAA)
주요내용 및 사례	•전자적 및 물리적 보안 장비의 제조업체, 판매업체 및 시스템 통합자/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표준 활동은 공중전화통신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활용한 범 집행 대응 및 통신 신호 발생과 같은 경보 및 비-경보 장비를 포함한, 전자적 및 물리적 보안 장비의 설계, 생산, 설치, 모니터링, 유지 관리, 그리고 기타 처리 또는 기타 사항들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The screenshot shows the CSAA website with a header for 'GSM Digital Communications' and a navigation menu.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ASAP' logo and the text 'Automated Secure Alarm Protocol (ASAP) Partners' with logos for APCO, CSAA, and Nlets. Below this is a 'LATEST NEWS' section with several articles, a 'TRANSLATE THIS PAGE' section, 'OUR SPONSORS' (including eBridge, Altronix, and SLR-EAR), and an 'UPCOMING EVENTS' section listing the 2013 Annual Meeting and Fall Ops Management Seminar. A 'MEMBERSHIP INFORMATION' section is also visible at the bottom right.
홈페이지	http://www.csaaul.org

기관/단체	미국-전미 도난호재경보협회 National Burglar & Fire Alarm Association(NBFAA)
주요내용 및 사례	•법 집행 대응 및 통신 신호 발생과 같은 경고 및 비경고 장비를 포함하여 설계, 생산, 공급, 설치, 모니터링, 유지 관리 및 기타 처리와 관련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전자 보안 장비 측면과 관련된 활동들을 포함하고 전자 보안 산업의 표준 활동의 감독 활동, 관련 조직들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표준 개발 등 제공 
홈페이지	http://www.alar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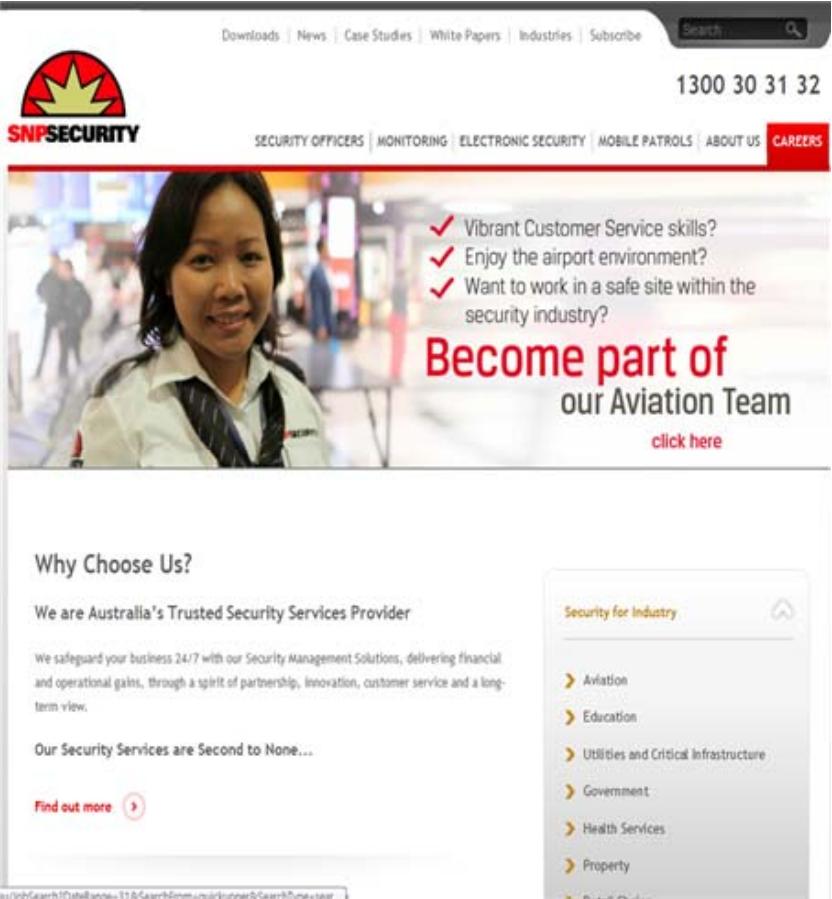
기관/단체	미국-연방 직업안전 · 보건국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OSHA)
주요내용 및 사례	•작업장에서의 미국 국민 보호수단을 제공하기위해 작업안전, 위생기준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 •Cleaning Industry Standard - 빌딩 청소 직종과 관련하여 유해요인 가이드라인 제시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part of the U.S. Department of Labor. The page features a red header with the OSHA logo and navigation links.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several highlighted sections: 'Preventing Heat Illness in Outdoor Workers' with a sun icon, 'Preventing Falls in Construction' with a fall hazard icon, and 'Silica: The Deadly Dust' with a lung X-ray image. There are also sections for 'OSHA & State Plan Offices', 'Top Links', 'Data & Statistics', and 'In Demand'. The footer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and a privacy policy link.
홈페이지	http://www.osha.gov

기관/단체	영국-안전보건청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U.K.(HSE)
주요내용 및 사례	•다양한 팸플릿 자료를 발간하여 수위 및 경비 직종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홈페이지	http://www.hse.gov.uk/

기관/단체	영국-보안산업기관 Security Industry Authority(SIA)
주요내용 및 사례	•영국 민간 보안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 •영국 내 보안 산업의 기반을 조절하고 보안 업무 관련 교육과 라이선스 매뉴얼 등을 제공 
홈페이지	https://www.sia.homeoffice.gov.uk

기관/단체	영국-보안산업협회 British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BSIA)
주요내용 및 사례	• 침입자 경보 시스템의 설치 및 모니터링 참여로 침입자 경보 시스템을 위한 표준 개발 참여, 검사, 인증 • 보안장비 유통 등의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참여 
홈페이지	http://www.bsia.co.uk/

기관/단체	영국-Bsecure Training Solutions Ltd.
주요내용 및 사례	• Security Guard 트레이닝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산업의 현실 맞춤형 교육을 제공 
홈페이지	http://www.bsecuretraining.co.uk/

기관/단체	호주-SNP Security
주요내용 및 사례	호주 경비업체로서 Aviation Security, Education, Electronic Security, Guard Security, Monitoring 작업 
홈페이지	http://www.snpsecurity.com.au/

기관/단체	Avantguard
주요내용 및 사례	· Security Guards
홈페이지	http://www.avantgarde.de

기관/단체	Bsecure Training Solutions Ltd.
주요내용 및 사례	· Security Guards
홈페이지	http://www.bsecuretraining.co.uk/

기관/단체	Boss Security Services
주요내용 및 사례	· Manned guarding & patrols
홈페이지	http://www.boss-security-services.co.uk

기관/단체	British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BSIA)
주요내용 및 사례	· construction site security-a guide
홈페이지	http://www.bsia.co.uk/

기관/단체	Bureau of Labor Statistics
주요내용 및 사례	· Security guards: Injuries, illnesses, and fatalities
홈페이지	http://www.bls.gov

기관/단체	NSP Security
주요내용 및 사례	· Security Officers: protecting your business
홈페이지	http://www.snpsecurity.com.au

기관/단체	NSR Security
주요내용 및 사례	· Security Guards
홈페이지	http://nsr.com.au

2. 국내 유관기관 및 단체/업체와 사례

단체명	사업 내용
한국경비신문	-경찰청 소식, 시큐리티 광장, 경비지도사, 학회, 법령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49-49 힐탑오피스텔 1012호 02)587-6816 world1848@naver.com
	http://www.ksnews.kr/
한국경호경비학회	-경호, 경비, 소방 및 기타 안전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70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5층 박 준석 교수실 031)321-0039
	http://www.kssa96.or.kr/
한국경호경비협회	-경호, 경비 교육 -구인/구직 정보제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7동 은오피스텔 507호 0505-211-5112
	http://www.ss112.com/
한국경호협회	-경호, 경비 관련 구인/구직 정보제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4-8 난지빌딩 4층 02)514-8112 master@iguard.co.kr
	http://www.iguard.kr
대한경비협회	-경비 업체의 발전과 고객의 안전을 도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3-4 산업유통상가 가동 가열 302 호 02)2060-8800 gksa21@daum.net
	http://www.gksa.or.kr/
한국경비지도사 협회	-경비지도사 자격증 교육 -구인/구직 정보제공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2동 432-14(삼우빌딩 4층) 02)470-4262
	http://www.ksia.in/
한국경비협회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설립 -국가 공인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주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2가 3동 273-24(경협회관 5층) 02)3274-1112 Webmaster@ksan.biz
	http://www.ksan.or.kr/index.do

단체명	사업 내용
한국민간경비학회 (KSPS)	-방법·방재·방화·환경 그리고 사회안전 등과 관련된 제반 민간 경비 분야를 연구
	광주광역시 관산구 첨단 중앙로 23 남부대학교 삼애관 4층 405호 062)970-0130 leecheolho@hanmail.net
	http://www.security21.or.kr/
한국 시큐리티 융합 경영학회	-시큐리티 융합경영(경호경비, 스포츠, 경찰, 국방)과 관련된 제반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고, 국내 및 해외 산학연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한국 시큐리티 융합경영의 발전과 바람직한 지식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기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인문사회관 310-2호 사회체육학과 031)280-3794 security1004@hanmail.net
	http://www.kosscom.or.kr

기관/단체	KOSHA
주요내용 및 사례	· 건물관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사고사례 만화집 · 건물관리업 사고사망 사례집 · 건물관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넘어짐 재해예방 · 건물관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떨어짐 재해예방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안전보건 가이드: 알아두면 안전해요!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안전과 건강관리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재해예방: 안전을 지키면 행복해요~ · 경비업무 주요 재해사례 및 안전작업방법 · 경비업무 체크리스트 현장점검표 · 고령근로자 건물관리업 재해사례 만화집: 순간의 선택, 운명을 가르다 ·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관리업무 보조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구겨 신은 신발이 앓아간 봄: 2009 여성근로자 재해예방 교육자료(건물종합관리업) · 그림으로 알아보는 사고사례-건물관리업 사고사례: 경비 · 순찰업무 · 아파트 지하계단 ·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물관리업 · 지키지 못한 약속: 고령근로자 재해예방 교육자료(건물종합관리업) · 폭우로 침수된 지하 계단에서 실족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업체명	사업 내용
(주)대신종합관리	-아파트 단지 경비업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96-2 062)452-0115
	http://dstotal.kr/main/
(주)두리교우파워 시스템	-시설경비 용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93번지 두리빌딩 3층 02)766-5477
	http://www.idoori.co.kr/
성원산업용역(주)	-용역경비, 주차관리, 시설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 2동 1025-73 02)841-2491
	http://www.swservice.co.kr/
유림STS	-경비, 청소, 소독 및 시설관리 업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6 슈마프라자 201호 031)487-6776
	-경비, 청소, 소독 및 시설관리 업무
캡스텍(주)	-인력 경비 서비스, 종합시설 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8동 142층 1644-8788
	www.capstec.co.kr
화신종합주택관리 (주)	-공동주택/빌딩관리, 아파트관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4-9 모건시티 703호 032)329-1551
	www.whasin.co.kr

한국경비협회 회원사

번호	정화조(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1	에스원	1588-3112	서울
2	에이디티캡스	02-3485-9292	서울
3	용진실업	02-784-0607~8	서울
4	동서기연	02-780-7559	서울
5	한국종합경비보장	02-2677-0223	서울
6	동방디에스시스템	02-794-1674~5	서울
7	석산마스타기업	02-3486-3100	서울
8	서운에스티에스	02-2246-9124	서울
9	씨앤에스자산관리	02-732-9676	서울
10	명신방호실업	02-3481-3755	서울
11	영창	043-255-7757~8	충북
12	향우종합관리	02-417-9391~3	서울
13	우지기업	02-737-8822	서울
14	달마	02-523-5757	서울
15	예주산업	02-536-3466~8	서울
16	엠피에스	02-334-8811	서울
17	경원산업관리	02-836-4381~8	서울
18	삼구아이앤씨	02-828-3939	서울
19	대덕프라임산업	02-3401-4132	서울
20	진광시스템	02-384-6761~4	서울
21	백상기업	02-3270-7200	서울
22	에스디케이	02-337-9773-4	서울
23	삼경TMC	02-3141-4161~4	서울
24	교보리얼코	02-2290-4057	서울
25	한국안보씨콤	02-703-2222	서울
26	고암	02-326-3011	서울
27	코에스이엠	02-511-3161~2	서울
28	홍안실업	02-844-7625	서울
29	국제안전시스템	02-964-0508	서울
30	가양메인티넌스	02-786-9303	서울

번호	정화조(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31	가양메인티넨스	02-786-9303	서울
32	에스엔에스에이스	02-2190-7400	서울
33	보흥실업	02-761-0633	서울
34	세계안전기업	02-783-7309	서울
35	대중실업	02-326-3333	서울
36	국제경보산업	02-2672-5691~2	서울
37	대중개발	031-713-1291	경기
38	성화개발	02-887-1155	서울
39	영신엔지니어링	02-717-1266~7	서울
40	보건기업	02-833-2731	서울
41	대교산업	02-783-2774	서울
42	미림개발	02-739-9535	서울
43	동양상사	02-3443-2333	서울
44	한미기술	02-548-3888	서울
45	대영코세코	02-556-3540	서울
46	삼정경보	02-588-4830~2	서울
47	을경산업	02-3402-0848~9	서울
48	성원산업	02-831-1237~8	서울
49	대원공신	031-912-2037-8	경기
50	동도시스템	02-2277-0070	서울
51	동우유니온	02-545-2355	서울
52	한국안전관리	02-841-0541	서울
53	동덕홍업	02-716-5294	서울
54	삼일티엠에스	02-924-8415	서울
55	코리아안전기업	02-467-9553	서울
56	동아안전기업	02-2675-8084~5	서울
57	신화종합관리	02-501-1525	서울
58	보경실업	02-718-4221~2	서울
59	국제공신	02-844-4112	서울
60	이화솔루션	02-476-8114	서울

VII. 기타 활용자료

1. 경비 업무 현장점검표(체크리스트)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고 개정내용을 게시하는가?
2. 산재발생기록과 재발방지계획을 작성·실행하고 있는가?
3.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있는가?
4. 전 직원이 매년 건강진단(일반 및 특수)을 하고 주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하는가?
5.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문제점은 개선하였는가?
6.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교육하였는가?
7. 유해물질 사용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는가?
8. 리프트, 승강기, 공기압축기 등 안전검사 대상 기계가 있는가? 안전검사를 하였는가?

● 작업자의 행동

1. 랜턴, 야광조끼, 야광봉을 휴대하는가?
2. 계단을 오르내릴 땐 손잡이를 잡는가?
3. 주머니에 손을 넣고 경사, 결빙, 어두운 곳을 순찰하지 않는가?
4. 흡연하면서 작업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지 않는가?
5. 작업 중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는가?
6. 사다리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2인 1조로 작업하는가?
7. 톱, 가위 등 용도에 맞는 작업도구를 사용하는가?
8. 엘리베이터나 주차설비 이상 발생 즉시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는가?
9. 주차유도 시 부딪힘에 주의하면서 유도하는가?
10. 소화전, 분전반, 가스차단밸브의 위치와 사용법을 아는가?
11. 중량물 취급 시 2인 1조로 작업하거나 대차를 사용하는가?
12. 주기적으로 혈압측정을 하는가?

● 기계 설비 작업장

1. 세면시설, 의자, 냉장고, 선풍기, 난방기, 구급약품(유효기간 내)을 구비하는가?
2. 주차설비의 인터폰, 근접센서, 경광등, 부저는 정상 작동하는가?
3. 고정식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는가?

4.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엔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가?
5. 돌출부위는 충돌 방지표시를 하였는가?
6. 비상통로는 확보되고 완강기는 정상 작동하는가?
7. 통로는 충분히 밝은가?
8. 통로는 정리정돈 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9. 계단은 파손부위가 없고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였는가?
10. 전열기구 사용 시 소화기를 비치하는가?
11. 전화기나 무전기는 정상 작동하는가?

● 운영 및 관리

1. 경비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가?
2. 현장 점검결과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가?
3. 작업안전요령(사용설명서)이 정해져 있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가?
4. 작업안전수칙, 사용설명서, 재해예방방법 및 동업종 재해사례, 응급처치, 기계기구의 점검, 건강증진, 근골격계질환예방 및 스트레칭, 비상대응훈련 등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가?
5. 화재발생 시 소방 및 대피방법을 알고 있는가?
6. 비상연락망이 게시되어 있는가?
7. 운동, 금연, 식사조절 등 건강증진활동을 하고 있는가?

● 재료나 물질

1. 식수(온수, 냉수)를 비치하는가?
2. 농약, 피부자극성물질 등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가?
3. 피부자극성물질, 살충제, 소독약품은 필요한 만큼만 지정장소에 보관하는가?
4. 쓰레기봉투에 날카로운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는가?

2.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안전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 건물관리업 시설물 유지관리

1. 위험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가?
2. 각종 계기류 확인 시 감전 예방을 위한 절연장갑을 착용하는가?
3. 정화조의 점검과 같은 산소결핍 작업 시 필요한 측정 장비를 갖추거나 사용하는가?
4.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응급 연락체계를 갖추고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구조 작업을 하는가?
5. 정화조 출입 시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판을 설치하는가? 또는 임의로 정화조 개방을 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가?
6. 기계 점검, 보수 시 동력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작업하는가?
7. 고장 난 승강기를 임의로 열거나 기기를 조작하지는 않는가?
8. 각종 전기기계기구 작업 시 작업자가 감전 사고에 대한 작업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9. 승강기 점검, 보수 시 접근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가?
10. 사다리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2인 1조 작업, 안전한 구조의 사다리 사용 등)을 숙지하고 있는가?
11. 소화기 및 소화전의 작동 및 사용방법을 아는가?
12. 흡연하면서 작업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지 않는가?
13. 교대 근무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가?
14.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가?
15.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자신의 병력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건강관리를 하는가?

수위 및 경비원 직종 안전 매뉴얼 요약

2013



넘 어 짐 주의



추 락 주의



수위 및 경비원과 안전



- **수위 및 경비원**은 아파트, 주택, 사무실, 교회 및 기타 건물을 관리하며, 불법침입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옥과 기타 재산을 감시·경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직업사전(한국고용정보원)에선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불법침입, 도난, 화재,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사람을 **경비원**이라고 정의하였다.
- **수위 및 경비원**의 작업은 입주민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고객응대 작업**, 도난예방 및 입주자의 안전,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보안 작업**, 관련 시설물과 차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 작업**, 시설물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정리하는 **환경미화 작업**으로 분류된다.
- **수위 및 경비원**은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남성이며, 근무형태는 주야 2교대 혹은 24시간 맞교대로 격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 **수위 및 경비원**은 고령자들이 많고 장시간 근무,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불규칙한 생활시간으로 인한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관련 **재해자의 65.7%는 순찰보안 작업 중 발생**하며, 환경미화(17.6%), 시설관리(11.9%) 순으로 발생한다.
- 수위 및 경비원 직종 관련 **재해는 넘어짐(45.3%), 떨어짐(12.1%), 작업관련질병(7.4%)**으로 발생한다. 반면, **사망 재해는 작업관련질병(43.5%), 떨어짐(18.0%), 넘어짐(14.9%)**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수위 및 경비원 10대 안전수칙



① 미끄러운 바닥이나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주의하라

- 수위 및 경비원의 재해자는 50% 정도가 넘어서서 발생한다. 기름기나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곳, 턱이나 장애물, 돌출부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② 계단이나 난간, 사다리에서 내려갈 때와 승강기에서 떨어지는 사고에 유의하라

- 계단이나 난간, 사다리에서 내려갈 때는 시야확보를 하고 손잡이를 잡고 조심하여 내려간다.
- 기계식 주차기나 엘리베이터 오작동시 임의로 손으로 문을 열다 떨어지는 사고에 주의하라.

③ 중량물 취급 시 요통 등의 근골격계질환에 유의하라

- 5kg이상의 중량물은 가능한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뺨치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취급하는 횟수나 시간을 줄인다. 가능한 중량물은 몸에 가까이 붙이고, 빨꿈치 높이에서 취급하도록 노력한다.

④ 부딪히거나 물건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에 유의하라

- 전지작업, 전구교체작업 등과 같이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보안면, 보안경, 안전화 등을 착용한 뒤 작업한다.

⑤ 출입문,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짐게 등에 의한 끼임 사고에 유의하라

- 출입문이 갑자기 닫히거나 끼일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짐게에도 끼일 수 있다.

⑥ 교통사고와 폭력행위 등에 유의하라

- 교통정리나 외부인의 출입 및 주차,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에 유의한다.

⑦ 베임 및 찔림 사고에 유의하라

- 재활용품 분리작업이나 예초기, 전지작업 등에서 베이거나 찔릴 수 있으므로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⑧ 유해물질 취급 및 보관에 주의하라

- 순찰이나 시설관리 시 청소약품, 화학물질 등을 취급할 때는 안전장갑과 안전장화를 착용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 청소약품과 같은 유해물질은 보관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⑨ 외부인과의 폭력행위 등에 유의하라

- 외부인의 출입, 주차관리 등의 고객응대 시 언행에 유의하여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⑩ 뇌·심혈관질환,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 등의 고령 근로자의 건강관리 확보

- 고령근로자는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많고, 노화로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작업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습관을 관리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의 조치절차를 습득한다.

수위 및 경비원 작업 OPL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사고 1위는 넘어짐 사고입니다!

주요 유해.위험 요인	① 아파트, 빌딩 내 바닥에 있는 물기, 엔진 오일 등에 의한 미끄러짐 위험 ② 수면장애, 불규칙한 생활 등 교대작업 부적응에 의한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 ③ 과도한 업무량 및 스트레스, 야간근무, 개인적 습관에 의한 뇌심혈관 질환																	
위험성평가	- 주요 재해유형 - ① 미끄러짐(전도) ② 부딪힘(충돌) ③ 교대작업 부적응 증후군 ④ 뇌심혈관질환	<table><tr><td>빈도\강도</td><td>대</td><td>중</td><td>소</td></tr><tr><td>고</td><td>중대</td><td>중대</td><td>미미</td></tr><tr><td>중</td><td>중대</td><td>경미</td><td>미미</td></tr><tr><td>저</td><td>미미</td><td>미미</td><td>미미</td></tr></table>	빈도\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빈도\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재해사례	새벽 근무지 초소로 가기 위해 경비 용품을 챙겨 들고 건물 외부 계단을 올라가다 구겨 신은 신발에서 발이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																	
주요 예방대책	① 근무 또는 작업 내용에 적합하고 올바른 복장 착용 ② 바닥 물기, 엔진오일 등 미끄럼 사고의 원인은 발견 즉시 제거 ③ 높은 조도 유지 및 미끄럼 방지 기능 안전화 착용 ④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속적 산업보건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및 상담																	
관련법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② 제27조(계단의 강도), 제28조 (계단참의 높이) ③ 제29조(천장의 높이), 제30조 (계단의 난간) ④ KOSHA G-10-2008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수위 및 경비원 작업 OPL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사고 2위는 떨어짐 사고입니다!

주요 유해.위험 요인	① 아파트 및 빌딩 내 승강기의 임의 개방에 의한 떨어짐 및 끼임 ② 안전수칙 미준수로 주차 기계의 체인에 상의가 끼임 ③ 계단, 난간,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질 위험																			
위험성평가	- 주요 재해유형 - ① 떨어짐(추락) ② 끼임(협착) ③ 미끄러짐(전도)	<table><tr><td>빈도\강도</td><td>대</td><td>중</td><td>소</td></tr><tr><td>고</td><td>중대</td><td>중대</td><td>미미</td></tr><tr><td>중</td><td>중대</td><td>경미</td><td>미미</td></tr><tr><td>저</td><td>미미</td><td>미미</td><td>미미</td></tr></table>			빈도\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빈도\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재해사례	아파트 및 빌딩 내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해 이상 유무를 살피기 위해 강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다 아래로 떨어짐																			
주요 예방대책	① 승강기 관리자 외 출입금지 조치 ② 승강기 및 주차 설비 유지 보수전문가에 의한 점검, 정비, 수리 ③ 승강기 및 주차설비 오작동 시 전원 차단 후 이상유무 확인 ④ 계단, 사다리를 내려갈 때 시야확보 후 손잡이를 잡고 내려감																			
관련법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양중기)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수위 및 경비원 작업 OPL

수위 및 경비원 직종의 사고 3위는 요통 등의 직업관련성질환입니다!

주요 유해.위험 요인	① 현관문이 갑자기 닫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완충장치 부재로 끼임 ② 무거운 중량물을 갑자기 들러다 허리를 다친 요통성 재해 ③ 아파트 현관문 주변 계단의 물기, 얼음 등 미끄러움 유발 요인																
위험성평가	- 주요 재해유형 - ① 끼임(협착) ② 요통, 근골격계질환 ③ 미끄러짐(전도) <table><tr><th> 빈도 \ 강도 </th><th>대</th><th>중</th><th>소</th></tr><tr><th>고</th><td>중대</td><td>중대</td><td>미미</td></tr><tr><th>중</th><td>중대</td><td>경미</td><td>미미</td></tr><tr><th>저</th><td>미미</td><td>미미</td><td>미미</td></tr></table>	빈도 \ 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빈도 \ 강도	대	중	소														
고	중대	중대	미미														
중	중대	경미	미미														
저	미미	미미	미미														
재해사례	출입문을 열고 택배 물건을 전달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출입문이 바람에 닫히면서 오른손을 가격하여 손가락이 골절되고 표피가 떨어져짐 																
주요 예방대책	① 현관문 완충장치 혹은 도어 스톱퍼 등의 장치로 끼임 예방조치 ② 중량물 이동 시에는 경사로를 이용하고 가능하면 2인 1조로 작업 ③ 중량물의 운반 시 대차 등 운반도구 활용 ④ 아파트 현관문 주변 계단 등의 미끄러움 유발 요인 제거																
관련법규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미끄러짐의 방지)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작업장의 출입구)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고령근로자를 위한 휴식시간과 휴게시설)																

수위 및 경비원 직종 안전 매뉴얼

**제2차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위험직종
기초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

발 행 일 : 2013년 11월 15일

발 행 인 : 백헌기

연구 책임자: 한성대학교 정병용 교수

발 행 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전 화 : (032) 5100-500

Homepage : www.kosha.or.kr
